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5-2차

#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 방안

2015. 5.


**선 거 연 수 원**

(제도연구부)

○ 주요 국가의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방안」 파악을 위하여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5개국 연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취합하였음.

○ 본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관 개인의 의견 또는 견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힘.

# 목 차

□ 국가별 제도개요 ····· 1

□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및 투표편의 제공방안

1. 영국 ····· 6

2. 독일 ····· 23

3. 미국 ····· 46

4. 호주 ····· 60

5. 일본 ····· 73

# 국가별 제도개요

## 1. 영국(United Kingdom)

###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급증하는 장애인유권자 수에 비해 정부 및 정당 차원의 선거정보 제공 실적은 미미함. 다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정부 지원 아래 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

○ 주요정당들은 지난 2010년 총선 이후 장애인유권자들을 위한 '읽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해 발간함.

###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표적 관련법으로는「장애인차별금지법 (DDA 1995)」,「평등법 (EA 2010)」,「정보자유법 (FIA 2000)」 등이 있음.

○ 정부는 장애인유권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평등지원자문단(EASS), 평등인권위원회(EHRC)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영국 내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 진행형임.

○ 투표소 직원은 어떤 경우라도 장애인유권자들이 비장애인유권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거감독관이 맡음.

○ 장애인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유권자들은 우편투표 및 대리인을 지명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 독일(Federal Republic of Germany)

###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정부 소속으로 장애인 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를 통해 장애인에게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음.
- TV 방송국을 통해 진행되는 선거토론방송 또는 선거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국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음성지원 또는 텍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2002년 제정된 「장애인 평등법」에 기초하여 정부 관련부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선거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장애인 평등법 제14조 및 제15조」)
- 「연방선거법 시행령」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선거증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투표소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를 설치함.
- 장애인 또는 문맹 등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를 제외하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표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력자를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함.

## 3.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미국 대부분 주의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선거의 후보자 및 주민발의 투표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자 및 투표안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 할 수 있음.

###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미국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법(ADA)」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선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 「투표지원법(HAVA)」 제정 이후 장애인들의 선거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각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 장비 개선을 위해 장애인 시설 이동투표 허용 등 장애인 편의 제공하고 있음.

###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
- 투표소로 진입하는 통로의 경사, 복도의 폭, 장애인용 밴을 위한 공간 등 주차장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과 투표소 입구의 넓이 등을 「장애인법」에 규정하여 투표 편의 제공
- 최근에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투표 등 장애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고 있음.

## 4. 호주(Australia)

###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호주선거위원회(AEC)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파일을 제공하며, 청각장애인 혹은 언어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는 국립 릴레이 서비스(National Relay Service)를 제공.
- 2013년 연방선거에서는 총 7,697개 투표소 중에 11.8%이 완벽하게 장애인 접근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70.2%이 부분적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이 되어 있었음.

###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1992(DDA 1992)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해 장애인유권자 편의 제공
- 「연방선거법」을 통해 시작장애인 유권자가 전자보조투표기기(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시력이 나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투표주재관에게 확인받는 경우, 해당 유권자는 도움받을 사람을 지명하여 참관인의 참석 하에 기표소로 함께 들어가서 기표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음.
-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자동전화투표서비스 (Automated Telephone Voting service),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도 가능하며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Hospital that are polling places) 또는 원격지에서 이동투표도 할 수 있음.

## 5. 일본(Japan)

### 1) 선거관리기관 등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정보 제공 실태

-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고하는 형식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하거나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장애인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일본의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 규정은 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
-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를 통해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며, 한정적으로 민간단체에 의한 장애인 투표지원 있음.

### 3) 투표편의 제공 방법

- 총무성은 각 자치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등의 선거정보 제공을 의뢰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1].
- 전국 규모의 강제 규정은 없으나,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구정촌(市區町村)별로 점자, 음성 테이프를 이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대부분의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1) 총무성청취자료(http://www8.cao.go.jp/shougai/suishin/kaikaku/s_kaigi/k_9/pdf/s4.pdf)

# Ⅰ. 영 국

영국 연구관 : 윤성원

##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 1) 선거관리기관·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2015년 총선에 등록한 선거인수는 총 4,642만 5,386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유권자는 1,1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자선단체인 'Papworth Trust'는 1,200만으로 추산).[2] 이는 영국 유권자 4명 중 1명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함.

-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총선을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추세임. 'Papworth Trust'가 총선 전인 지난 4월 장애인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가 "확실히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92%에 달하는 유권자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3]
- 학습장애 분야에서 영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인 멘캡(Mencap)에 따르면, 학습장애를 지닌 유권자 5명당 1명 이하 꼴로 2005년 총선에 참가했으나, 2010년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한 학습

2)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and Office for Disability Issues,'Disability facts and figures'(16 January 2014). 이 가운데 45%는 국가연금 수혜를 받는 고령자임. 이와 관련, 영국 국가통계청(ONS)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고령화에 따른 장애를 수반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3) Papworth Trust,'Disabled people feel ignored but will turn out to vote for the NHS'(24 April 2015).

장애 유권자 수는 3명당 1명 선으로 증가함.[4)]

○ 급증하는 장애인유권자 수에 비해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정부 및 정당 차원의 직접적인 선거정보 제공 실적은 미미한 편임. 다만 정부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단체들 간의 협력, 또는 자선단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이밖에 지역별로 활성화된 자선단체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Scope, Scope Cymru, Capability Scotland, Disability Action, Disability Wales, Inclusion London 등이 대표적 지역단체들이며, 장애인유권자들은 해당 단체를 통해 각종 선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주요정당은 2010년 총선 이후 학습·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읽기 쉬운 선거공약집(easy read manifestos)'을 일반 공약집과 구분해 발간하고 있음 (<사진 1> 참조).
- 'Mencap'은 웹사이트를 통해 각 정당별 선거공약집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Mencap'과 더불어 학습·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제작·배포하고 있음. 동 자료 내에는 선거등록 기한 및 방법, 우편·대리인투표 신청을 비롯한 투표절차 전반, 투표소 확인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음 (<사진 2> 참조).
- BBC는 청각장애인유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See Hear'을 통해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 총선 전에는 특별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각 정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소속 정당의 주요 공약 및 후보

4) Cabinet Office and Mencap,'Easy read guide to voting and registering to vote'

자 정보 등을 제공하게 함 (<사진 3> 참조). 더불어 'Facebook' 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진1> 자유민주당 발간 '2015 총선 읽기 쉬운 선거공약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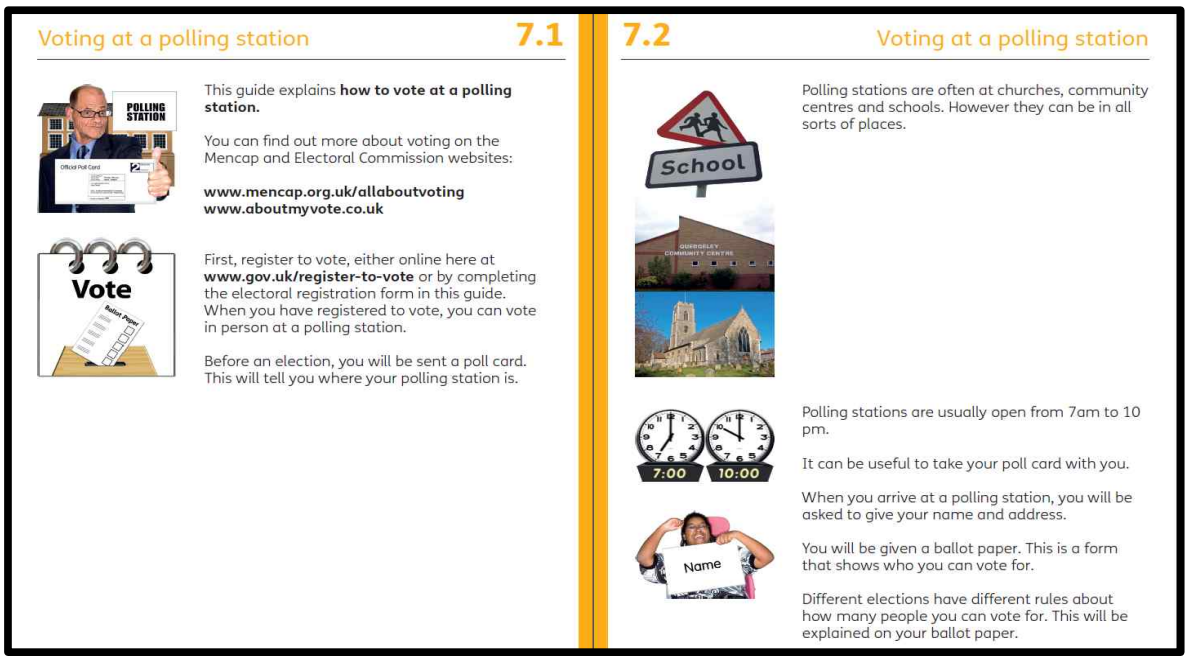


<사진2> Mencap 발간 발달·학습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선거지침서

<사진3> BBC ‘See Hear’장면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구성)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은 장애인유권자 투표권 보장과 관련한 주요 근거 법안 중 하나임. 동법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모든 주체는 장애를 지닌 시민들이 해당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당한 수준의 물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투표구역 역시 이에 해당함.
- 「평등법 (Equality Act 2010)」은 기존의 다양한 차별금지법들을 대체하여 단일화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보장을 위한 보다 새로운 근거 법안으로 볼 수 있음. 동 법안은 서비스제공, 업무·고용, 교육, 장애인 이동 등과 관련해 '차별이 금지되는 유형과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5]
-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은 선거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걸쳐 장애인유권자들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6]
- 영국정부는 장애인유권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평등지원자문단(EASS), 평등인권위원회(EHRC)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7]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등은 '장애인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을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동 협약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생산 권리, 프

5) 손대수,'영국의 평등법 제정의미와 시사점'(세계법제정보센터: 2010.12.10).
6) Local Mencap Liverpool,'Using the Freedom Information Act'
7) Department for Education, Governmental Equalities Office and Office for Disability Issues,'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equality'(7 May 2015).

라이버시권 등을 명기하고 있음.

- 고용연금부는 지난 2014년 9월 'The Accessible Britain Challenge' 프로그램을 발족함.[8] 동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적극적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 증대, 공간의 혁신적 사용, 포괄적 사회활동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유권자들의 선거정보 획득 및 참정권 행사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사례별)

###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영국 내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진행형임.

- 장애인유권자 접근을 위한 임시경사로를 사용하는 등 일회성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가건물 혹은 일부지역에서는 카라반(이동주택)을 투표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유권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됨.
- 투표소 입구의 계단, 좁은 출입구 및 복도, 낮은 기표대 부재 등 접근성 제약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남.

❍ 2010년 총선 기준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소 안팎의 장애인유권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미온적임.

- 모든 지자체는「선거관리법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8) https://www.gov.uk/accessiblebritain (검색일: 2015.5.12.)

및「선거등록 및 관리법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에 따라 법이 정한 시한 내에 투표소로 활용된 건물의 내·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선거에 활용될 공공기관, 민간시설, 임시구조물 등을 선정해야 함.

- Scope이「정보자유법 2000」에 의거해 영국 전역의 지자체에 2010년 총선에 활용된 투표소 자료 공개를 요청한 결과 약 70% (27,340개)의 투표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89%의 투표소가 법이 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11%에 달하는 투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전체 투표소 중 평가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30%의 투표소를 포함해 40%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장애인유권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함.[9)]
- 평가가 실시된 투표소 가운데 3,851개의 투표소가 장애인 접근성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총선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이는 해당 투표소의 장애인유권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거 당일 각 투표소 직원들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됨을 의미함.[10)]

2)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시설현황 안내 및 제공

○ 투표소 직원은 어떤 경우라도 장애인유권자들이 비장애인유권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유권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11)]

9) Scope,'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July 2010), pp. 12-13.
10) Scope,'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July 2010), p. 13.
11) The Electoral Commission,'Disabled people's voting rights'

- 지역 장애인 단체들 역시 장애인유권자들의 선거과정에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 투표소 안내문(polling station sign)은 장애인유권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크게 제작돼야 하며, 입구를 가리키는 방향이 제시돼야 함. 투표소 내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입구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입구로 안내하는 이정표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배치해야 함. 유권자 지침서(Guidance for voters) 역시 투표소에 도착한 장애인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반드시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투표일 동안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장애인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입구(방화벽 제외)는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며, 입구 앞에 놓인 도어매트가 느슨한 경우 제거해야 함.[12)]
- 장애인유권자들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필요한 경우 유권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해 선거일 동안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유권자가 쉴 수 있는 의자가 제공돼야 하며, 팔걸이가 있는 의자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함께 비치하는 것을 권고함.[13)]

###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우편투표 및 대리인투표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거제도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이동편의 제공관련 규정은 부재함.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유권자는 우편투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투표소 직접투표를 선호하는 장애인유권자가 있는 경우 지역 장애인

12) http://www.scope.org.uk/get-involved/campaigns/general-election/voting (검색일: 2015.5.8.)
13) The Electoral Commission,'Handbook for polling station staff'(2012), p. 20.

업무 관련 자선단체들이 선거정보 및 이동차량을 제공하고 있음.[14]

4) 투표도우미의 투표지원 등

❍ 장애인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거감독관(presiding officers)이 맡음.

- 만일 장애인유권자가 투표소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경우 선거감독관은 투표소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한 이후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에 있는 유권자에게 전해줄 수 있음. 기표된 용지를 유권자로부터 건네받은 이후엔 즉시 해당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함. 한편 투표함은 어떤 경우라도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투표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15]
- 선거감독관은 장애인유권자들이 기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인유권자는 기표소 내에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선거감독관은 이에 따라 기표할 수 있음.[16]

❍ 장애인유권자들은 필요한 경우 조력자와 함께 투표소에 진입할 수 있음.

- 장애인유권자의 조력자는 반드시 18세 이상의 가까운 가족 또는 친척(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조부모 및 손자 등)이어야 하며, 해당 유권자는 선거감독관에게 조력자의 도움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장애인유권자의 조력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유권자 조력자로서의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거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4) Papworth Trust 정무담당 Flora Wilkie와의 인터뷰 (2015.5.21.)
15) *ibid.*
16) *ibid.*

선거감독관은 반드시 해당 장애인유권자 및 조력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따로 마련된 목록(List of voters with disabilities assisted by companions)에 기재해야 함 (5. 기타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참조).[17]

##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

- 시각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발부받기 전 기표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확대된 형태의 투표용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해야 함. 시각장애인유권자는 필요시 투표소 직원에게 '견본'이라고 적힌 휴대용 확대 투표용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18]
- 시각장애인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부착된 촉각판 (tactile voting template)을 이용해 조력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진 4> 참조). 투표소 내 모든 직원은 반드시 해당 선거용품 사용방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촉각판이 투표용지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유권자가 해당 용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낮은 형태의 기표대(low level polling booths) 및 시각장애인유권자들이 투표함을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투표함을 둘러싼 표식을 설치할 수 있음.[19]

  - 2010년 총선 기준 낮은 형태의 기표대를 확보한 투표소는 62%에

17) *ibid*, p. 21.
18) http://www.scope.org.uk/get-involved/campaigns/general-election/voting (검색일: 2015.5.8.)
19) http://www.scope.org.uk/get-involved/campaigns/general-election/voting (검색일: 2015.5.8.)

불과함 (2005년 총선 66%).[20]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시각장애인유권자용 부착식 촉각판 용례는 다음과 같음: 선호후보의 번호 옆에 부착된 촉각판을 젖힌 뒤 표기→촉각판 원위치(선호투표제 등 복수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 과정을 반복)→투표용지에서 촉각판 제거→투표→제거된 촉각판을 선거감독관에 반납.[21]

<사진4> 촉각판이 부착된 투표용지

○ 그러나 적지 않은 장애인유권자들이 촉각판 등 해당 용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활용하기 쉬운 형태의 관련용품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22] 게다가 투표소 직원들이 촉각판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고됨. 2010

20) Scope,'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July 2010), p. 28.
21) The Electoral Commission,'Handbook for polling station staff'(2012), p. 21.
22) BBC,'Why do disabled people feel ignored when it comes to voting?'(28 March 2015).

년 총선 기준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유권자 기표용 촉각판을 구비하지 않거나, 구비하더라도 투표소 직원들이 해당용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합하면 전체 투표소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다음은 기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임.[23)]

- "시각장애인이라 투표용지를 망칠까봐 기표를 하는 게 망설여졌어요. 엉뚱한 곳에 표시를 하거나 뭔가 잘못 그려져서 표기기준에 벗어난 투표용지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 "발달장애를 지닌 아들을 데리고 투표장에 갔는데 투표소 직원들이 '쟤 (투표)용지 하나 더 버렸네'라고 하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들과 함께 우편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 "투표소에 구비된 촉각판 규격이 표준 투표용지에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대된 견본투표용지에 맞는 크기였죠.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라며 자신이 근무한 3년 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임시방편으로 규격에 맞춰 촉각판을 자른 뒤에야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유권자가 촉각판을 사용하지 않고 선거감독관에 기표를 요청할 경우, 선거감독관은 반드시 유권자의 지시에 따라 기표를 해야 함. 유권자의 선호후보 발언 및 이에 따른 선거감독관의 대리기표는 반드시 후보자, 선거관계자 혹은 투표소 직원 등이 동석한 가

23) Scope,'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July 2010), pp. 28-31.

운데 진행돼야 함.[24]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Law Commission)는 선관위에 시각장애인유권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선거용품 제공과 관련된 단일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함.[25]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 대상·범위 및 방법

○ 장애인유권자 혹은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전문식견을 가진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는 지자체의 투표소 평가결과에 대해 선관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이는 지자체가 장애인유권자들을 위한 투표소 접근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불만사항을 접수받은 선관위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불만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

○ 선관위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진정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는 웹사이트에 공고함. 더불어 해당 지자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된 진정서의 처리결과를 공고해야 함. 지자체는 이후 2달 이내에 선관위 평가결과를 반영해 적절한 변경조치를 취해야 함.

##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투표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 기준 및 현황

○ 장애인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유권자들은 우편투표 또는 대리

24) The Electoral Commission,'Handbook for polling station staff'(2012), p. 21.
25) Law Commission,'Electoral Law Summary'(9 December 2014).

인 지명을 통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26)]

- 우편투표는 선거일 11 근무일 전까지, 대리인투표는 선거일 6 근무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기존 대리투표 변경 건은 11일 근무일 전까지 신청). 우편투표 및 대리인투표는 △특정 선거 지정 (1회) △특정 기간 지정 △영구적 등으로 기간을 세분화해 신청할 수 있음.
- 장애로 인해 우편투표 신청서에 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 선거팀은 서명제공 의무부과를 철회할 수 있음.[27)]
- 대리인투표 신청은 일반 대리투표와 다른 별도의 신청서(Application to vote by proxy based on disability)를 통해 가능함.
- 지자체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장애지원비용 및 자립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유권자들은 별도의 제청절차 없이 신청서의 해당사항만 작성해 신청이 가능함. 그 밖의 신청자들은 등록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제청을 받아야 함.[28)]
- 대리인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선거인이어야 하며, 가까운 가족 혹은 친지로만 임명할 수 있음.
- 대리인투표 신청 기한이 지난 이후 신체에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선거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별도의 대리인투표 신청이 가능함. 신청절차 및 기준은 일반 장애인유권자의 대리인투표 신청과 같음.[29)]

26) The Electoral Commission,'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5－Absent Voting (April 2014).
27) https://www.shropshire.gov.uk/democracy/voting-and-elections/postal-voting-and-proxy-voting/ (검색일: 2015.5.14.)
28) The Electoral Commission,'Application to vote by proxy based on disability'
29) The Electoral Commission,'Application to vote by emergency proxy based on disability'

2) 장애인시설 거소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들이 우편투표시 비밀투표, 직접투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대체로 높은 편임 (비밀투표 85%, 직접투표 77%).[30]

○ 그러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의 비밀·직접투표 보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임. 배송된 투표용지를 우편에서 분리하고 기표 뒤 반송봉투에 넣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일부 장애인유권자들은 기표 자체의 어려움을 근거로 종이가 아닌 형태의 대체투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31]

## 5. 기타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 「국민대표법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Section 39)은 시각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 과정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감독관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개정「국민대표법 2000」(Section 13)은 시각장애인유권자를 위한 대형투표용지(견본)의 투표소 설치 의무를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s)에 부과함.

○ 「선거관리법 2006」및「선거등록 및 관리법 2013」은 지방정부가 모든 투표소 및 잠재적 투표장소를 평가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유권자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30) Scope,'Polls Apart 2010: Opening elections to disabled people'(July 2010), p. 34.
31) ibid., pp. 33-35.

○ 「의사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2005)」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의 의사능력과 관련된 평가에 법적 기준을 제공함. 동 법(Section 1)에 따르면 발달장애유권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됨. 동 법(Section 3)은 의사결정능력 평가 기준으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이해 △해당 정보의 담지 △해당정보의 의사결정과정 활용 △본인의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수화 포함)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투표에 관해 타인을 대신해 내리는 결정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함(Section 29).

- 이와 관련,「선거관리법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Section 73)은 유권자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투표권 능력 없음'으로 규정하는 모든 관습법 규정을 폐기한다고 규정함.

## 6. 각종 선거물품 사진[32)]

<사진5> 조명장치가 달린 장애인, 일반인 겸용 기표대

<사진6> 장애인 및 일반인 함께 투표하는 장면

32) 해당 사진은 영국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관련용품을 디자인하고 제조・공급하는'pakflatt'홈페이지 (http://www.pakflatt.com/home)에서 발췌한 것임 (검색일: 2015.5.13.)

# Ⅱ. 독 일

독일 연구관 : 이승현

##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 1) 선거관리기관 · 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선거공약, 후보자 정보 등 제공방법 및 사례

-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정보제공 의무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없음.
- 장애인의 경우에는 선거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에 상대적인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습득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지원을 통한 정보제공, 청각장애인에게는 인쇄물을 통한 선거정보의 제공과 같이 접근가능성에 기초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33]
- 선거공약이나 후보자 정보에 대해 선거관리기관 차원에서 모든 정당에게 동등한 기회로 제공되는 장애인 관련 지원은 없음.
- TV방송국을 통해 진행되는 선거토론방송 또는 선거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국 자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음성지원 또는 텍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34]

33)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공약집, TV광고 등은 정당에서 제작되며,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작되어 사용되는 자료를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하는 것임.

- 2002년 제정된 「장애인 평등법」에 기초하여 정부 소속으로 장애인 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를 통해 장애인에게 선거관련 정보의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음(「장애인 평등법 제14조 및 제15조」).[35]

**[참고조문]**

**「장애인 평등법」**

**제14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위한 연방정부 대표자의 직무**

(1) 연방정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위한 연방정부 대표자를 임명한다.
(2) 대표자는 임무수행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3) 임기에 있어서 해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15조 임무와 권한**

(1) 대표자의 임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비장애인들의 동등한 삶의 여건을 배려해야 할 연방의 책임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자는 이런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및 남성장애인들의 상이한 삶의 여건들을 고려하고 성별로 특화된 차별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
(2) 연방의 각 부처는 동제1항의 임무수행 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통합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는 모든 법률, 시행령 및 중요한 계획 시 대표자를 참여시킨다.
(3) 모든 연방관서와 연방의 공공사무소는 대표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며 특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의 열람을 보장한다. 개인과 관련된 자료들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은 침해되지 않는다.

**「BGG」**

**§ 14 Amt der oder des Beauftragten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1) Die Bundesregierung bestellt eine Beauftragte oder einen Beauftragten fü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2) Der beauftragten Person ist die für die Erfüllung ihrer Aufgabe notwendige Personal-

34) 이러한 음성지원, 텍스트 서비스는 선거방송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사인 ZDF와 ARD 채널의 경우에는 일반적, 상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되고 있음.
35) 연방하원의회 선거 -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SharedDocs/Downloads/DE/BPB_Wahlhilfe.html
유럽의회 선거 -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SharedDocs/Downloads/DE/EuropawahlBrosch.html

und Sachausstattung zur Verfügung zu stellen.

(3) Das Amt endet, außer im Fall der Entlassung, mit dem Zusammentreten eines neuen Bundestages.

**§ 15 Aufgabe und Befugnisse**

(1) Aufgabe der beauftragten Person ist es, darauf hinzuwirken, dass die Verantwortung des Bundes, für gleichwertige Lebensbedingungen für Menschen mit und ohne Behinderungen zu sorgen, in allen Bereichen des gesellschaftlichen Lebens erfüllt wird. Sie setzt sich bei der Wahrnehmung dieser Aufgabe dafür ein, dass unterschiedliche Lebensbedingungen von behinderten Frauen und Männern berücksichtigt und geschlechtsspezifische Benachteiligungen beseitigt werden.

(2) Zur Wahrnehmung der Aufgabe nach Absatz 1 beteiligen die Bundesministerien die beauftragte Person bei allen Gesetzes-, Verordnungs- und sonstigen wichtigen Vorhaben, soweit sie Fragen der Integration von behinderten Menschen behandeln oder berühren.

(3) Alle Bundesbehörden und sonstigen öffentlichen Stellen im Bereich des Bundes sind verpflichtet, die beauftragte Person bei der Erfüllung der Aufgabe zu unterstützen, insbesondere die erforderlichen Auskünfte zu erteilen und Akteneinsicht zu gewähren. Die Bestimmungen zum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bleiben unberührt.

-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시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선거증의 교부신청 시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8조(신청에 따른 선거인명부 등재 절차)**

(1)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은 선거일 21일 전까지 서면으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신청도 허용된다. 단체신청은 기재된 선거권자 모두의 자필서명을 필요

로 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이 경우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가 준용된다.

**§ 18 Verfahren für die Eintragung in das Wählerverzeichnis auf Antrag**

(1) Der Antrag auf Eintragung in das Wählerverzeichnis ist schriftlich bis spätestens zum 21. Tage vor der Wahl bei der zuständigen Gemeindebehörde zu stellen. Er muss Familiennamen, Vornamen, Geburtsdatum und die genaue Anschrift des Wahlberechtigten enthalten. Sammelanträge sind, abgesehen von den Fällen des Absatzes 5, zulässig; sie müssen von allen aufgeführten Wahlberechtigten persönlich und handschriftlich unterzeichnet sein. Ein behinderter Wahlberechtigter kann sich hierbei der Hilfe einer anderen Person bedienen; § 57 gilt entsprechend.

**제27조(선거증 신청)**

(1) 선거증의 교부신청은 기초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텔레그램, 전보, 텔레팩스, 이메일 또는 그 밖의 문서화가 가능한 전송방식 등이 서면으로 인정된다. 전화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신청 시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7조가 준용된다.

**§ 27 Wahlscheinanträge**

(1) Die Erteilung eines Wahlscheines kann schriftlich oder mündlich bei der Gemeindebehörde beantragt werden. Die Schriftform gilt auch durch Telegramm, Fernschreiben, Telefax, E-Mail oder durch sonstige dokumentierbare elektronische Übermittlung als gewahrt. Eine telefonische Antragstellung ist unzulässig. Ein behinderter Wahlberechtigter kann sich bei der Antragstellung der Hilfe einer anderen Person bedienen; § 57 gilt entsprechend.

○ 후보자 TV토론회 수화제공 여부 및 사례(사진 포함)

- 선거 후보자의 TV 연설이나 대담, 토론회 등에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지난 2013년 연방하원 선거 과정에서 개최된 TV토론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동시통역 또는 자막방송이 제공되지는 않음.
- TV 방송국의 음성지원, 텍스트 서비스는 선거방송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사인 ZDF와 ARD의

경우 일반적, 상시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제공되고 있음.

❍ 투표절차 및 투표소 위치정보 안내 방법 및 사례

-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
|---|
|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br>제46조 투표소<br>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br>(이하 생략)<br><br>「BWO」<br>§ 46 Wahlräume<br>(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br>(이하 생략) |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연방의회선거법」과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이 장애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선거과정의 지원에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평등법」을 통해 연방정부 내에 장애인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통해 장애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함.

○ 금치산자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러 정신병원에 구금 중인 경우에는 선거권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제13조」).

**[참고조문]**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13조 선거권 배제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배제된다.

1. 법원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박탈된 자
2. 자신의 모든 일상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법원의 잠정적 명령에 따라 보호자가 임명된 자(금치산자); 이는 보호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민법 제1896조 제4항 및 제1905조에서 규정된 업무들을 포괄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3. 형법 제20조와 결합된 제63조에 기초한 명령에 의거하여 정신병원에 구금 중인 자
4. (삭제)

§ 13 Ausschluß vom Wahlrecht

Ausgeschlossen vom Wahlrecht ist,

1. wer infolge Richterspruchs das Wahlrecht nicht besitzt,
2. derjenige, für den zur Besorgung aller seiner Angelegenheiten ein Betreuer nicht nur durch einstweilige Anordnung bestellt ist; dies gilt auch, wenn der Aufgabenkreis des Betreuers die in § 1896 Abs. 4 und § 1905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bezeichneten Angelegenheiten nicht erfaßt,
3. wer sich auf Grund einer Anordnung nach § 63 in Verbindung mit § 20 des Strafgesetzbuches in einem psychiatrischen Krankenhaus befindet.
4. (weggefallen)

##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사례별)

###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투표소를 설치함에 있어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설비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46조 투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BWO」
**§ 46 Wahlräume**
(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
(이하 생략)

### 2)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시설현황 안내 및 제공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설치된 투표소에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의 투표

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음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사진1> 장애인 투표가능 투표소 공고문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중증장애인이 투표소에 내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환자, 노인, 수감자 등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를 설치하도록 함.
-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 설치 대상은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 치료원 및 교도소 등임(「연방선거법 시행

령 제8조 및 제13조」).

- 특별투표구의 설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관청이 설치함(「연방선거법 제13조」).
- 특별투표구의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설치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투표구를 통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연방선거법 제13조제3항」).
- 특별투표구에서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증(「연방선거법 제25조」이하)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함.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조(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치료원 및 교도소 등에서의 투표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관할 투표구의 선거위원장이나 그 직무대리인 및 2명의 투표구 선거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다. 시・읍・면 관청은 그 시・읍・면 관청에 속한 다른 투표구의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투표구)**

(1) 병원, 양로원, 노인주택, 요양원, 교정원 등 본 시설물 이외에는 적당한 투표공간이 없는 많은 수의 선거인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그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읍・면 관청은 선거증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를 위하여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시설은 1개의 특별투표구로 통합할 수 있다.

(3) 특별투표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가 적용된다.

**§ 8 Beweglicher Wahlvorstand**

Für die Stimmabgabe in kleineren Krankenhäusern, kleineren Alten- oder Pflegeheimen,

Klöstern,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en und Justizvollzugsanstalten sollen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und soweit möglich bewegliche Wahlvorstände gebildet werden. Der bewegliche Wahlvorstand besteht aus dem Wahlvorsteher des zuständigen Wahlbezirks oder seinem Stellvertreter und zwei Beisitzern des Wahlvorstandes. Die Gemeindebehörde kann jedoch auch den beweglichen Wahlvorstand eines anderen Wahlbezirks der Gemeinde mit der Entgegennahme der Stimmzettel beauftragen.

**§ 13 Sonderwahlbezirke**

(1) Für Krankenhäuser, Altenheime, Altenwohnheime, Pflegeheime, Erholungsheime und gleichartige Einrichtungen mit einer größeren Anzahl von Wahlberechtigten, die keinen Wahlraum außerhalb der Einrichtung aufsuchen können, soll die Gemeindebehörde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Sonderwahlbezirke zur Stimmabgabe für Wahlscheininhaber bilden.

(2) Mehrere Einrichtungen können zu einem Sonderwahlbezirk zusammengefasst werden.

(3) Wird ein Sonderwahlbezirk nicht gebildet, gilt § 8 entsprechend.

○ 2009년 연방하원 선거 과정에서 사민당(SPD)이 장애인 이동 지원차량을 통해 선거운동을 시행한 사례는 있으나 투표소로의 이동에 한정하여 운행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님.

4) 투표도우미의 투표지원 등

○ 독일의 경우 투표소의 관리 및 질서유지는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담당하며 별도의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또는 문맹 등의 사유로 투표에 어려움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제33조제2항」).

[참고조문]

「연방의회선거법」

제33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1항 (생략)

제2항 문맹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입하거나, 투표용지를 접거나 스스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없는 선거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66조(우편투표)

(3) 투표용지는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제5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제57조가 준용된다. 선거권자가 도움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경우에는 도움 제공자가 선거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부합하게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루어졌음을 서명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만 16세를 경과한 자여야 한다.

「BWahlG」

§ 33 Wahrung des Wahlgeheimnisses

(1) (생략)

(2)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kann sich der Hilfe einer anderen Person bedienen.

§ 66 Briefwahl

(3) Der Stimmzettel ist unbeobachtet zu kennzeichnen und in den Stimmzettelumschlag zu legen; § 56 Abs. 8 gilt entsprechend. Für die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gilt § 57 entsprechend. Hat der Wähler den Stimmzettel durch eine Hilfsperson kennzeichnen lassen, so hat diese durch Unterschreiben d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r Briefwahl zu bestätigen, dass sie den Stimmzettel gemäß dem erklärten Willen des Wählers gekennzeichnet hat; die Hilfsperson muss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ben.

##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사진 포함)

- ❍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를 제외하면 장애인을 위한 기표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 장애인의 기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투표 도우미 제도임(「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 투표 도우미의 지정은 선거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관위에 통지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 투표 도우미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법률에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지정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도 도우미가 될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 선거권자의 장애여부 또는 투표 도우미로 지정된 자의 적절성이나 투표시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입할 수 있음.
- ❍ 장애인 또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기표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해당 투표소 중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표소에 대한 공고는 이루어짐(「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참고조문]

「연방의회선거법 시행령」

**제46조 투표소**

제1항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한다. 가능한 경우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그 관청의 건물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

고 선거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의 행정청은 투표소에 장애물이 없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1)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도움 제공자는 선거권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중간 생략)…

(4) 맹인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위해 투표용지 점자틀을 이용할 수 있다.

「BWO」

**§ 46 Wahlräume**

(1) Die Gemeindebehörde bestimmt für jeden Wahlbezirk einen Wahlraum. Soweit möglich, stellen die Gemeinden Wahlräume in Gemeindegebäuden zur Verfügung. Die Wahlräume sollen nach den örtlichen Verhältnissen so ausgewählt und eingerichtet werden, dass allen Wahlberechtigten, insbesondere Behinderten und anderen Menschen mit Mobilitätsbeeinträchtigung, die Teilnahme an der Wahl möglichst erleichtert wird. Die Gemeindebehörden teilen frühzeitig und in geeigneter Weise mit, welche Wahlräume barrierefrei sind.

(이하 생략)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1)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bestimmt eine andere Person, deren Hilfe er sich bei der Stimmabgabe bedienen will, und gibt dies dem Wahlvorstand bekannt. Hilfsperson kann auch ein vom Wähler bestimmtes Mitglied des Wahlvorstandes sein.

…(중간 생략)…

(4) Ein blinder oder sehbehinderter Wähler kann sich zur Kennzeichnung des Stimmzettels auch einer Stimmzettelschablone bedienen.

<사진2>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사진3> 거동불편 장애인의 기표장면

###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장애인용 투표용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틀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투표용지 견본이 작성되면 이를 시각장애인 협회에 보내 투표용지에의 기표를 용이하게 하는 투표용지용 점자 틀이 제작되며, 해당 비용은 연방정부가 지원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 「연방선거법 제50조 제4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제50조(선거비용)**
(생략)…
(4) 연방은 투표용지용 점자틀을 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각장애인 협회들에게 투표용지용 점자틀의 제작 및 분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배상한다.

**§ 50 Wahlkosten**
(생략)…
(4) Der Bund erstattet den Blindenvereinen, die ihre Bereitschaft zur Herstellung von Stimmzettelschablonen erklärt haben, die durch die Herstellung und die Verteilung der Stimmzettelschablonen veranlassten notwendigen Ausgaben.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45조(투표용지, 우편투표용 봉투)**
(생략)…
(5) 투표용지 견본은 완성 즉시 지체 없이 투표용지용 점자틀을 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각장애인 협회들에 제공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책임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분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우편투표를 위해 필요로 하는 우편투표용 봉투와 투표용지용 봉투를 전달한다.

**§ 45 Stimmzettel, Umschläge für die Briefwahl**
(생략)…
(5) Muster der Stimmzettel werden unverzüglich nach ihrer Fertigstellung den Blindenvereinen, die ihre Bereitschaft zur Herstellung von Stimmzettelschablonen erklärt haben, zur Verfügung gestellt. Der Kreiswahlleiter weist den Gemeindebehörden die Stimmzettel zur Weitergabe an die Wahlvorsteher zu. Er liefert den Gemeindebehörden die erforderlichen Wahlbriefumschläge und Stimmzettelumschläge für die Briefwahl.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생략)…
(4) 맹인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위해 투표용지 점자틀을 이용할 수 있다.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생략)…
(4) Ein blinder oder sehbehinderter Wähler kann sich zur Kennzeichnung des Stimmzettels auch einer Stimmzettelschablone bedienen.

###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은 점자틀을 이용하여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투표과정 또는 기표절차와 관련하여 투표도우미를 지정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특정된 조력방법을 규정하거나 기표시 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장애를 가진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조력자를 지정하여 선거관리기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기표소에서 장애인의 조력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장애를 가진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조력자가 기표소에 함께 출입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투표과정에서 조력자가 기표를 위해 투표내용에 대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우편투표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진행한 경우, 투표인의 의사에 따라 기표가 진행되었음을 서명한 문서를 투표용지와 동봉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1)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도움 제공자는 선거권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2) 도움 제공 행위는 선거권자가 원하는 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자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3) 도움 제공자는 타인의 선거를 도우면서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4) 맹인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기 위해 투표용지 점자틀을 이용할 수 있다.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1)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bestimmt eine andere Person, deren Hilfe er sich bei der Stimmabgabe bedienen will, und gibt dies dem Wahlvorstand bekannt.

Hilfsperson kann auch ein vom Wähler bestimmtes Mitglied des Wahlvorstandes sein.

(2) Die Hilfeleistung hat sich auf die Erfüllung der Wünsche des Wählers zu beschränken. Die Hilfsperson darf gemeinsam mit dem Wäler die Wahlzelle aufsuchen, soweit das zur Hilfeleistung erforderlich ist.

(3) Die Hilfsperson ist zur Geheimhaltung der Kenntnisse verpflichtet, die sie bei der Hilfeleistung von der Wahl eines anderen erlangt hat.

(4) Ein blinder oder sehbehinderter Wähler kann sich zur Kennzeichnung des Stimmzettels auch einer Stimmzettelschablone bedienen.

**제66조(우편투표)**

(3) 투표용지는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제5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제57조가 준용된다. 선거권자가 도움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경우에는 도움 제공자가 선거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부합하게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루어졌음을 서명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만 16세를 경과한 자여야 한다.

**§ 66 Briefwahl**

(3) Der Stimmzettel ist unbeobachtet zu kennzeichnen und in den Stimmzettelumschlag zu legen; § 56 Abs. 8 gilt entsprechend. Für die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gilt § 57 entsprechend. Hat der Wähler den Stimmzettel durch eine Hilfsperson kennzeichnen lassen, so hat diese durch Unterschreiben d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r Briefwahl zu bestätigen, dass sie den Stimmzettel gemäß dem erklärten Willen des Wählers gekennzeichnet hat; die Hilfsperson muss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ben.

###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대상·범위 및 방법

○ 기표과정에서 조력자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1) 읽을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스스로 넣을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투표행위에 도움을 줄 사람을 지정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도움 제공자는 선거권자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1) Ein Wähler, der des Lesens unkundig ist oder der wegen einer körperlichen Beeinträchtigung gehindert ist, den Stimmzettel zu kennzeichnen, zu falten oder selbst in die Wahlurne zu werfen, bestimmt eine andere Person, deren Hilfe er sich bei der Stimmabgabe bedienen will, und gibt dies dem Wahlvorstand bekannt. Hilfsperson kann auch ein vom Wähler bestimmtes Mitglied des Wahlvorstandes sein.
…(이하 생략)

##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투표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 기준 및 현황

- 일반적 투표소 투표는 물론 우편투표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유형을 구별하여 투표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음.
- 선거구별로 별도의 우편투표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구별하여 우편투표구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음.
- 투표소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즉, 환자·노인·수감자 등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를 설치하도록 함.

- 이동 투표구 또는 특별 투표구 설치 대상은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 치료소 및 교도소 등임(「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
- 특별투표구의 설치는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관청이 설치하며, 특별투표구의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설치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동투표구를 통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연방선거법 제13조」).
- 특별투표구에서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증(「연방선거법 제25조」이하)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함.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8조(이동투표구선거위원회)

소규모의 병원, 양로원, 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치료원 및 교도소 등에서의 투표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관할 투표구의 선거위원장이나 그 직무대리인 및 2명의 투표구 선거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다. 시·읍·면 관청은 그 시·읍·면 관청에 속한 다른 투표구의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에 대하여 투표용지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투표구)

(1) 병원, 양로원, 노인주택, 요양원, 교정원 등 본 시설물 이외에는 적당한 투표공간이 없는 많은 수의 선거인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그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읍·면 관청은 선거증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를 위하여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여러 개의 시설은 1개의 특별투표구로 통합할 수 있다.

(3) 특별투표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가 적용된다.

**§ 8 Beweglicher Wahlvorstand**

Für die Stimmabgabe in kleineren Krankenhäusern, kleineren Alten- oder Pflegeheimen, Klöstern, sozialtherapeutischen Anstalten und Justizvollzugsanstalten sollen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und soweit möglich bewegliche Wahlvorstände gebildet werden. Der bewegliche Wahlvorstand besteht aus dem Wahlvorsteher des zuständigen Wahlbezirks oder seinem Stellvertreter und zwei Beisitzern des Wahlvorstandes. Die Gemeindebehörde kann jedoch auch den beweglichen Wahlvorstand eines anderen Wahlbezirks der Gemeinde mit der Entgegennahme der Stimmzettel beauftragen.

**§ 13 Sonderwahlbezirke**

(1) Für Krankenhäuser, Altenheime, Altenwohnheime, Pflegeheime, Erholungsheime und gleichartige Einrichtungen mit einer größeren Anzahl von Wahlberechtigten, die keinen Wahlraum außerhalb der Einrichtung aufsuchen können, soll die Gemeindebehörde bei entsprechendem Bedürfnis Sonderwahlbezirke zur Stimmabgabe für Wahlscheininhaber bilden.

(2) Mehrere Einrichtungen können zu einem Sonderwahlbezirk zusammengefasst werden.

(3) Wird ein Sonderwahlbezirk nicht gebildet, gilt § 8 entsprechend.

### 2) 장애인시설 거소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장애인 투표와 관련하여 별도의 감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장애인의 투표와 관련하여 조력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투표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우편투표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기표를 진행한 경우, 투표인의 의사에 따라 기표가 진행되었음을 서명한 문서를 투표용지와 동봉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보장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참고조문]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7조(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
(생략)…
(3) 도움 제공자는 타인의 선거를 도우면서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 57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3) Die Hilfsperson ist zur Geheimhaltung der Kenntnisse verpflichtet, die sie bei der Hilfeleistung von der Wahl eines anderen erlangt hat.
(이하 생략)
제66조(우편투표)
(생략)…
(3) 투표용지는 타인이 볼 수 없는 곳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제56조 제8항이 준용된다. 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투표에 대해서는 제57조가 준용된다. 선거권자가 도움 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경우에는 도움 제공자가 선거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부합하게 투표용지에 기표가 이루어졌음을 서명하여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 제공자는 만 16세를 경과한 자여야 한다.
§ 66 Briefwahl
(생략)…
(3) Der Stimmzettel ist unbeobachtet zu kennzeichnen und in den Stimmzettelumschlag zu legen; § 56 Abs. 8 gilt entsprechend. Für die Stimmabgabe behinderter Wähler gilt § 57 entsprechend. Hat der Wähler den Stimmzettel durch eine Hilfsperson kennzeichnen lassen, so hat diese durch Unterschreiben der Versicherung an Eides statt zur Briefwahl zu bestätigen, dass sie den Stimmzettel gemäß dem erklärten Willen des Wählers gekennzeichnet hat; die Hilfsperson muss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ben.

## 5. 그밖에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 「연방선거법」 및 「연방선거법 시행령」 이외에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 6.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선거물품 사진 등

○ 지난 2014년 6월에는 정부의 장애인대의원이 투표시 사용될 점자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디오 가이드, 문맹인을 위한 쉬운 용어로 작성된 가이드 등의 테스트가 진행된 바 있음(사진).[36]

<사진4> 테스트 후 사용될 장애인의 점자판

36)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SharedDocs/BilderGalerie/DE/20140603_Bundestagbesucherdienst_kk.html

# Ⅲ.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 1) 선거관리기관·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 미국 대부분 주의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각 선거의 후보자 및 주민발의 투표 안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은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자 및 투표안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 할 수 있음.
- ❍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정보는 음성파일로도 제공하고 있음.
- ❍ 대통령 후보자 TV토론 등을 특정하여 수화방송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없으나, 후보자 TV토론을 포함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 장애인들이 자막을 통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37]
-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각 주 정부는 각 주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들로 하여금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지정

37) http://www.ada.gov/pcatoolkit/ch3_toolkit.pdf (검색일: 2015. 5. 18)

된 투표소가 유권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이 힘든 곳일 경우, 해당 유권자는 주 정부에 투표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ADA와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HAVA)』[38] 등의 법률이 투표소의 접근성 및 투표장비의 구비 등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포괄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발달장애 등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의 제한은 아직까지 많은 주에서 법률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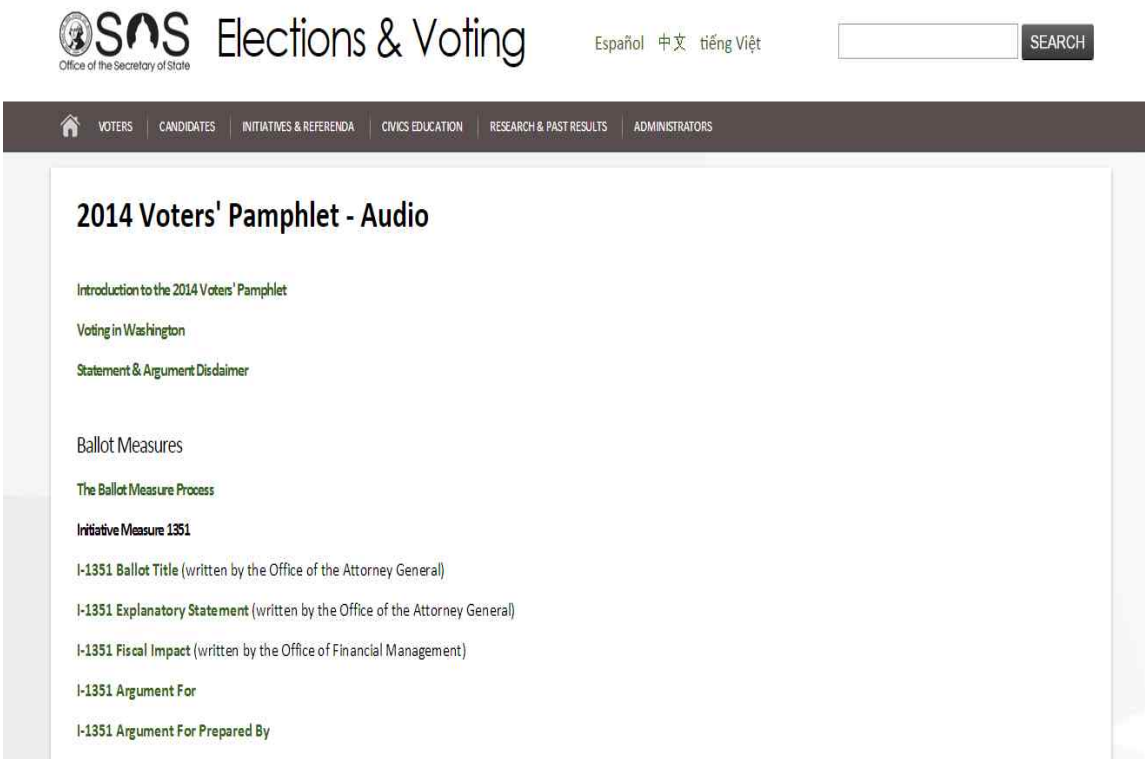


<사진1> 워싱턴 주 국무부의 2014년 선거에 대한 음성정보 게재 페이지[40]

38) 42 U.S.C. § 15301

39) http://www.ndrn.org/images/Documents/Issues/Voting/NDRN_state_voting_rights_MD_laws_062304.pdf (검색일: 2015. 5. 20)

40) https://wei.sos.wa.gov/agency/osos/en/press_and_research/PreviousElections/2014/General-Election/Pages/voters_pamphlet_audio.aspx (검색일: 2015.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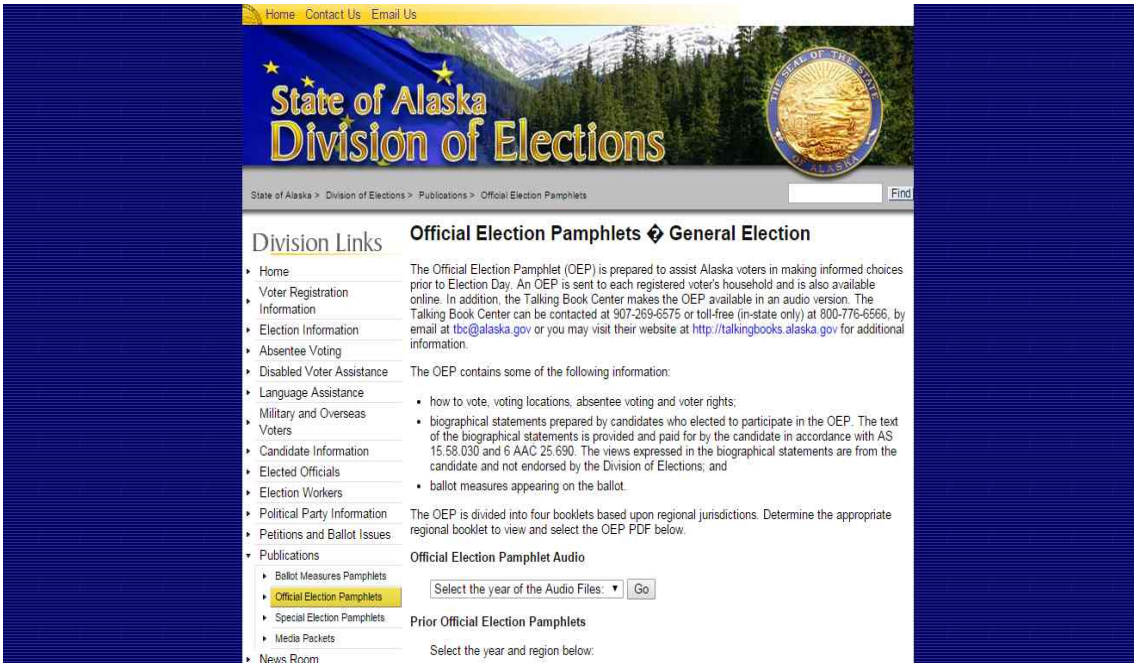


<사진2>알라스카 주 국무부의 2014년 선거에 대한 음성정보 게재 페이지[41)]

<사진3>캘리포니아 주 국무부의 2014년 선거에 대한 음성정보 게재 페이지[42)]

41) https://www.elections.alaska.gov/pub_oep.php (검색일: 2015. 5. 16)
42) http://www.voterguide.sos.ca.gov/en/audio/ (검색일: 2015. 5. 16)

2) 관련법 및 국가지원범위

❍ 2002년 제정된 HAVA는 각 주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장비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장애인의 투표권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HAVA의 261항과 291항에 명시되어 있음. HAVA는 장애인의 투표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주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투표소와 투표장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43)]
- HAVA가 투표소 및 장비와 관련하여 주 정부에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주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규정[44)]
- 연방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소에 장애인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투표 장비를 최소한 하나 이상 배치하여야 함. 이 투표 장비는 장애인들이 다른 유권자들이 일반적인 장비를 이용할 때와 동등한 정도로 투표의 기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함.[45)]

❍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는 2010년 기준으로 HAVA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의 투표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 개발 및 연구에 약 7,000,000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46)]

43) 42 U.S.C. § 15421
44) 42 U.S.C. § 15405
45) 42 U.S.C. § 15481(a)(3)
46)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2013. Experience of Voters with Disabilities in the 2012 Election Cycle.

##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HAVA는 모든 투표소들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구성하는 요건은 ADA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투표소로 진입하는 통로의 경사, 복도의 폭, 장애인용 밴을 위한 공간 등 주차장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 입구의 넓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미국장애인협의회(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투표소에 배정된 선거 관련 종사자들의 원활한 장애인 유권자 투표 지원을 위해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HAVA에 명시된 투표소 접근성은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013년에 발간된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선거 시기 동안 조사된 투표소 가운데 27% 만이 장애인들이 주차장에서 투표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투표소까지 이동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투표를 허용하는 커브사이드(curbside) 투표가 가능한 45%의 투표소를 제외해도 28% 이상의 투표소에서 장애인들이 투표 장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2000년 선거의 접근성 보장율 16%에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투표소에서 접근성 시설 제공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줌.[47]
- 다음 그림은 투표소 입구와 근접한 위치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4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Voters with Disabilities: Challenges to Voting Accessbility" (검색일: 2015. 5. 24)

확보하여 장애인 유권자가 하차하여 휠체어에 오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투표소의 예시임.[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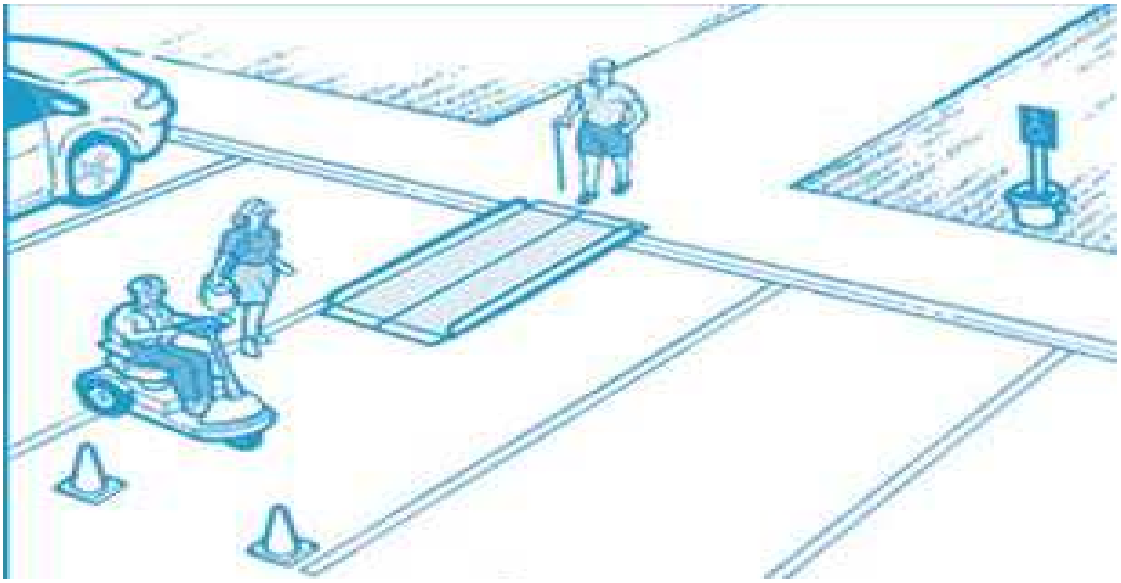

<그림1> 인도와 주차장 사이 경사로 설치 예시

2) 우편투표 시행 주의 장애인 유권자 지원 방안

○ 전면적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주의 경우 조력자 없이 우편투표가 불가능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워싱턴 주의 킹(King) 카운티의 경우 선거 시기에 별도의 투표소를 개설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49]

48)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Guideline.
49) http://www.kingcounty.gov/elections/voting/accessible.aspx (검색일: 2015. 5. 23)

<그림2> 워싱턴 주 킹 카운티의 투표소 표시판[50]

○ 반면, 마찬가지로 전면적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오리건 주는 2011년부터 장애인 유권자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51] 장애인 유권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경우, 선거 당국에 요청하여 담당자들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본인의 투표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

○ 태블릿 PC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시력이 약한 장애인들의 경우, 태블릿 PC의 글씨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인지 장애 혹은 독해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의 투표 지원에도 이용될 수 있음. 사지마비나 관절염 등의 증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손가락이나 태블릿 PC에 연결된 호흡조절 입력장치(sip-and-puff systems)을 통해 기표할 수 있음.

50) http://www.kingcounty.gov/elections/voting/accessible.aspx (검색일: 2015. 5. 23)
51) http://sos.oregon.gov/voting/Pages/disabilities.aspx (검색일: 2015. 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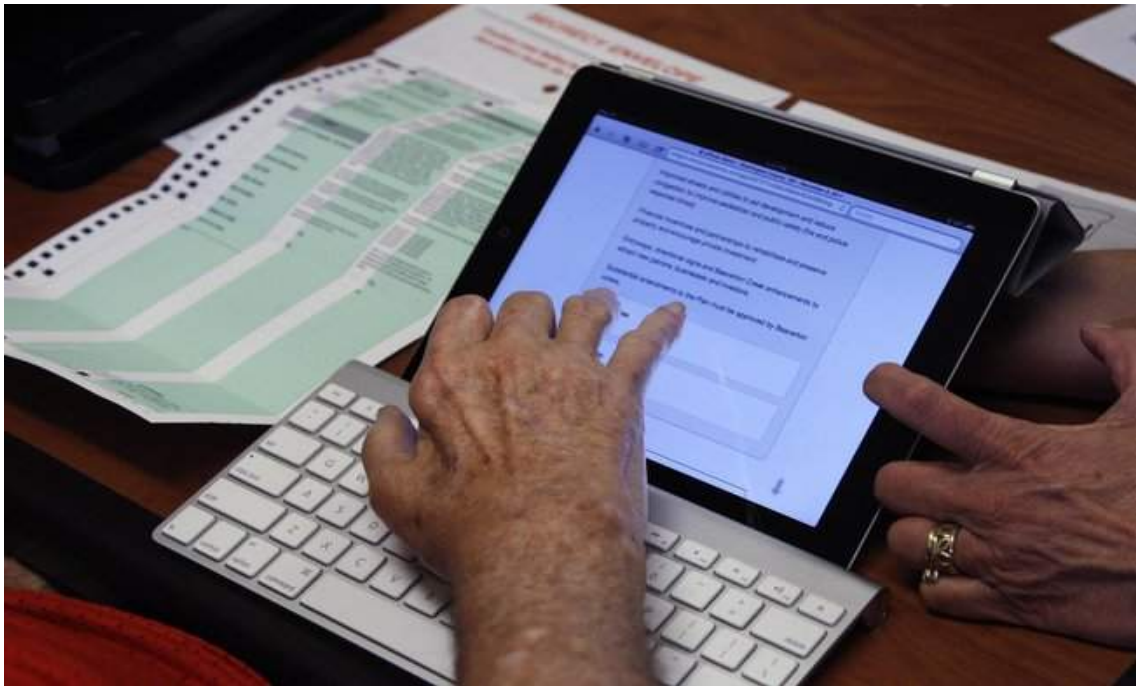

<사진4> 오리건 주 2011년 선거 시 유권자가 아이패드 이용 투표장면[52)]

###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편의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몇 개의 주에서는 투표소로의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사전에 부재자투표나 사전투표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조기에 투표하거나, 지역 내의 정당 혹은 후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53)]

52) http://www.nytimes.com/2011/11/17/us/oregon-tries-out-voting-by-ipad-for-disabled.html?_r=0 (검색일: 2015. 5. 28)

53) Louisiana Secretary of State. Voting in Lousiana; http://www.disabilityrightsohio.org/voter- rights-assistance (검색일: 2015. 5. 25)

##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 상술한 바와 같이, 연방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소에 장애인들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투표 장비를 최소한 하나 이상 배치하여야 함.[54]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장애인용 투표기는 ES&S에서 개발한 AutoMARK인 것으로 보임. AutoMARK는 여러 가지 기표방식 가운데 광학스캔(optical scan ballot)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혹은 약시자들의 투표를 지원하기 위한 헤드폰,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호흡조절 입력장치 등 여러 가지 증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55]
- 미국 선거는 다수의 선거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AutoMARK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특정 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스크린뿐만 아니라 오디오 장치를 통해서 해당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알려줌. 투표를 마친 이후,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본인의 기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본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투표를 시작할 수 있음.

54) 42 U.S.C. § 15481(a)(3)
55) https://www.verifie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ess/automark/ (검색일: 2015. 5. 28)

<사진5> AutoMARK의 이미지와 AutoMARK 사용 예시[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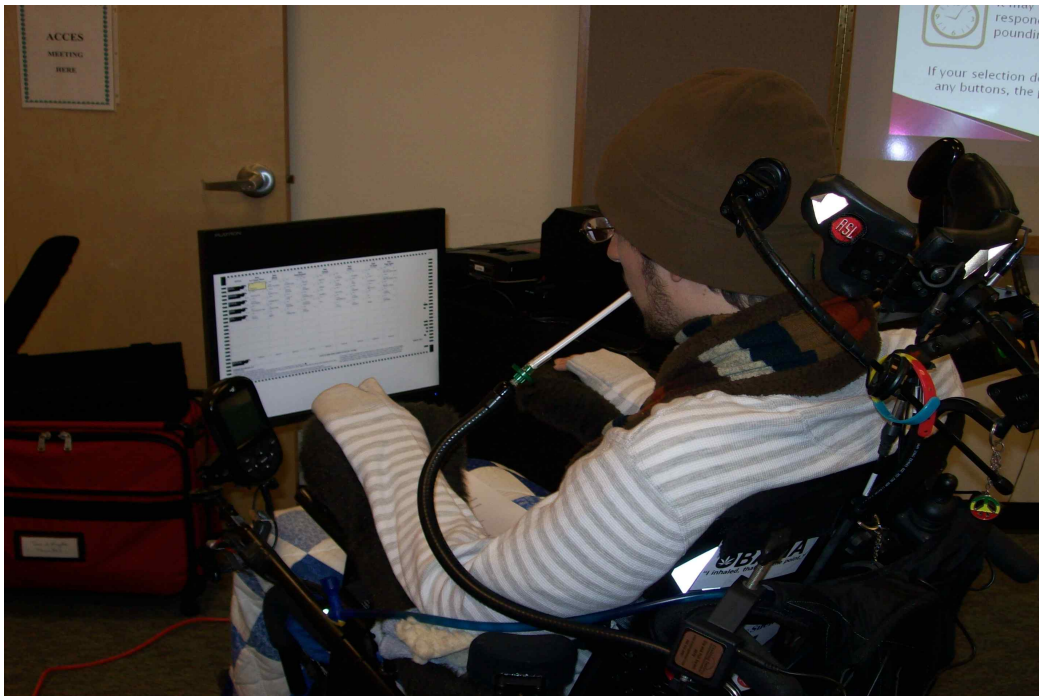


<사진6> 불수 장애인 유권자의 호흡조절 입력장치를 이용한 투표 장면[57)]

56)http://www.essvote.com/products/6/13/ballot-marking-devices/AutoMark;
https://www.verifie dvoting.org/resources/voting-equipment/ess/automark/ (검색일: 2015. 5. 28)
57) https://gurguircalsystemsadvocate.wordpress.com/2011/11/17/embracing-the-right-to-vote/ (검색일: 2015. 5. 25)

##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58)]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시설 거주자를 위해 일부 주에서는 “이동 투표(mobile polling)," 즉, 장애인 시설에서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 이동투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욕,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23개 주에서 주의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다음의 18개 주는 장애인 혹은 노인시설 거주자 투표 지원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음. 가장 일반적으로는 노조의 대표자나 유권자의 고용인이 아닌, 유권자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함.

| 주 | 지원자 자격 | 근거 법령 |
|---|---|---|
| 캘리포니아 | 유권자가 선택한 자 | Ca. Elec. Code §3021 |
| 플로리다 | 유권자가 선택한 자 | Fla. Stat. §101.655 and Fla. Admin. Code Ann. r. 65E-5.602 |
| 캔자스 | 유권자가 선택한 자; 지원자의 서약이 필요함 | Kan. Stat. Ann §25-2812 |
| 루이지애나 | 장애인 혹은 노인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유권자가 선택한 자 | La. Rev. Stat. Ann. §18:1333 |
| 메인 |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이 아닌, 유권자가 선택한 자 | 21-A MRSA § 753-B and §754-A |
| 매사추세츠 |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이 아닌, 유권자가 선택한 자 | M.G.L. c. 54, § 91B and M.G.L. c. 54, §98 |

58)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ting-for-residents-of-long-term-care-facilities.aspx (검색일: 2015. 5. 30)

| | | |
|---|---|---|
| 미네소타 | 선거 후보자가 아닌, 해당 유권자와 원래 친분이 있는 자 | Minn. Stat. Ann. § 203B.11 |
| 미시시피 | 유권자의 가족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 Miss. Code Ann. § 23-15-625 |
| 뉴욕 | 유권자가 선택한 자 | N.Y. Elec. Law § 8-407 |
| 노스캐롤라이나 | 유권자가 선택한 자; 장애인 혹은 노인 시설 종사자나 소유주, 선거공직자나 후보자, 정당인,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혹은 회계 책임자는 제외 | N.C. Gen. Stat. Ann. § 163-226.3 |
| 노스다코타 |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 혹은 후보자나 그 가족은 제외 | 16.1-07-04 |
| 오하이오 | 초당적 선거지원팀 | Ohio Rev. Code § 3501.29, §3509.08 and §3721.13 |
| 오클라호마 |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은 제외 | Okla. Stat. 26 §14-113.2 and 26 §7-123.3 |
| 로드아일랜드 | 초당적 선거지원팀 | R.I. Gen. Laws §17-20-14 and R.I. Gen. Laws § 17-20-2 |
| 사우스다코타 | 지역 선거담당자 | SDCL §12-19-9.1 |
| 테네시 | 초당적 선거지원팀 | Tenn. Code Ann. §2-6-601 |
| 텍사스 |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은 제외; 지원자의 서약이 필요함 | Tex. Elec. Code § 64.032 |
| 웨스트버지니아 | 유권자가 선택한 자; 노조나 유권자의 고용인의 대리인은 제외 | W. Va. §3-3-4 and § 3-3-5c |
| 위스콘신 | 특별선거보 혹은 가족 중 1인 | Wis. Stat §6.875 |

❍ 각 주의 법률 외에 장애인 시설의 거소투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주의 시행령에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위스콘신 주[59]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원하는 유권자는 해당 행정구역 선거담당자 혹은 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정 행정구역에 소속된 5인 이상의 유권자와 1인 이상의 부재자 투표 신청자가 있는 장애인/노인 거주 시설의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선거 담당자는 이 시설에 특별선거보를 파견해야 함. 특별선거보들은 해당 행정구역의 선거담당자 혹은 선거위원회에 의해 임명됨.
- 특별선거보로 임명된 자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해당 행정구역의 유권자
  ② 관련 훈련에 참가한 자
  ③ 해당 시설의 피고용인이 아닌 자
  ④ 해당 시설에서 최근 2년 내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자
  ⑤ 해당 시설의 피고용인 혹은 해당 시설에서 최근 2년 내에 근무한 기록이 있는 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자
- 공화·민주 양당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실시된 대통령 혹은 주지사 선거 결과 해당 행정구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정당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는 시설에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음. 참관인을 파견하고자 하는 정당은 투표 실시 전날 업무시간 종료 이전에 참관인의 성명을 선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인의 참관인을 제외한 (언론종사자를 포함한) 그 밖의 사람들은 참관이 금지됨.
- 선거와 관련된 특별선거보들의 활동은 참관인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59) http://www.gab.wi.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65/absentee_voting_in_residential_care_facilities_and_20843.pdf (검색일: 2015. 5. 30)

하지만, 참관인은 투표용지가 장애인 유권자에게 배부된 이후에는 해당 유권자와 투표를 지원하는 개인 사이의 어떤 대화도 들을 수 없음.

# Ⅳ. 호 주

호주 연구관 : 김리라

## 1. 시각·청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 1) 선거관리기관 · 후보자·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 Election Commission)에서 제공된 오디오 CD, 점자, 인터넷 문서, 큰 문자로 만들어진 파일, MP3 음성파일을 통해 후보자 및 정당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청각장애인 유권자는 국립 릴레이 서비스(National Relay Service)[60]를 이용하여 선거정보를 얻거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도 할 수 있음.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전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문자화된 정보를 음성으로 바꾸거나 음성정보를 문자화로 바꾸는 서비스, 문자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등 청각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 사무원이 취득한 모든 전화내용은 관련법에 의하여 비밀로 보장됨.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발달장애인 유권자는 투표절차 및 투표소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이나 후보자 정보를 얻

60) 청각장애인이나 언어발달장애인을 위한 호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함.  국립 릴레이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http://relayservice.gov.au/making-a-call/

는 것도 릴레이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내자를 위해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자료[61]와 쉬운 영어로 된 선거안내 가이드(Easy English Guides[62])를 제공하고 있음.

- 세션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투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긴 비디오, 의사결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호주 정부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게임, 선거인등록과 선거일 당일 시뮬레이션, 각기 다른 투표용지 작성해보기로 총 6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음.
- 각 세션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준비물, 그룹활동 내용, 토론주제, 안내자를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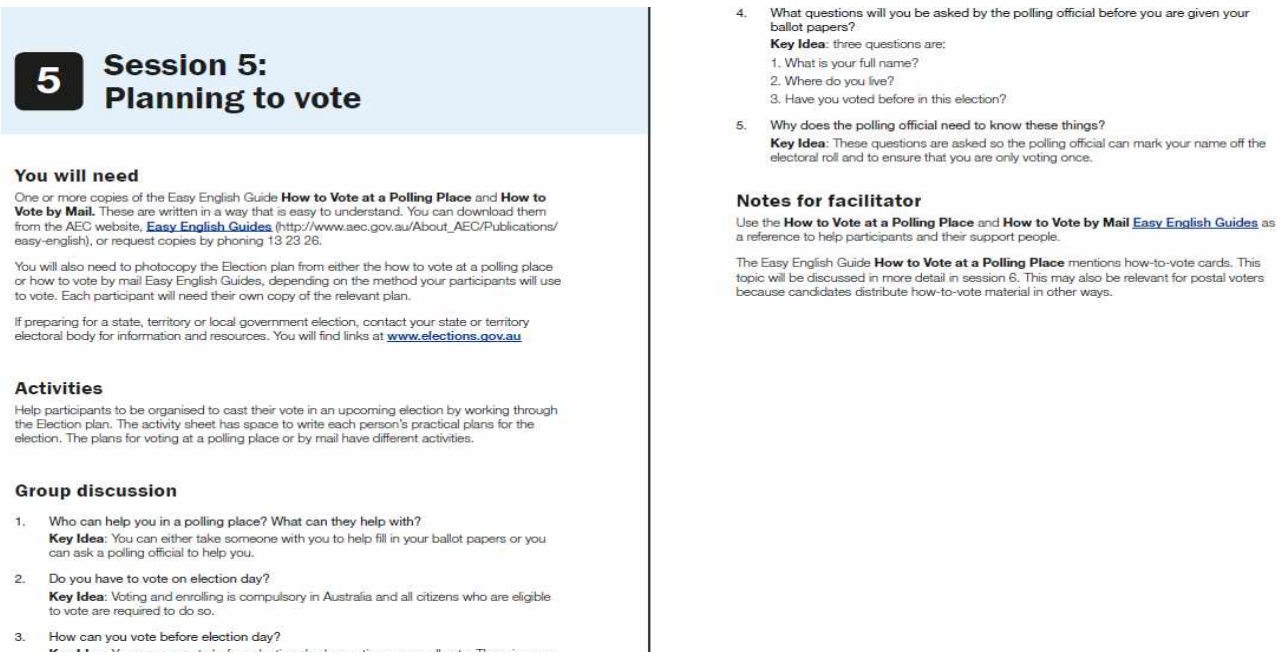

5 Session 5: Planning to vote

**You will need**

One or more copies of the Easy English Guid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and **How to Vote by Mail.** These are written in a way that is easy to understand. You can download them from the AEC website, Easy English Guides (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asy-english), or request copies by phoning 13 23 26.

You will also need to photocopy the Election plan from either th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or how to vote by mail Easy English Guides, depending on the method your participants will use to vote. Each participant will need their own copy of the relevant plan.

If preparing for a state, territory or local government election, contact your state or territory electoral body for information and resources. You will find links at www.elections.gov.au

**Activities**

Help participants to be organised to cast their vote in an upcoming election by working through the Election plan. The activity sheet has space to write each person's practical plans for the election. The plans for voting at a polling place or by mail have different activities.

**Group discussion**

1. Who can help you in a polling place? What can they help with?
   **Key Idea**: You can either take someone with you to help fill in your ballot papers or you can ask a polling official to help you.
2. Do you have to vote on election day?
   **Key Idea**: Voting and enrolling is compulsory in Australia and all citizens who are eligible to vote are required to do so.
3. How can you vote before election day?

4. What questions will you be asked by the polling official before you are given your ballot papers?
   **Key Idea**: three questions are:
   1. What is your full name?
   2. Where do you live?
   3. Have you voted before in this election?
5. Why does the polling official need to know these things?
   **Key Idea**: These questions are asked so the polling official can mark your name off the electoral roll and to ensure that you are only voting once.

**Notes for facilitator**

Use th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and **How to Vote by Mail** Easy English Guides as a reference to help participants and their support people.

The Easy English Guide **How to Vote at a Polling Place** mentions how-to-vote cards. This topic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in session 6. This may also be relevant for postal voters because candidates distribute how-to-vote material in other ways.

<사진1>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자료 중 세션5 자료

61)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교육(Education)파트 장애인과 학습장애를 가진 유권자를 위한 투표 학습(Voting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learning difficulties) 내용 중. http://www.aec.gov.au/education/voting-activities.htm 2015년 5월 검색.

62)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쉬운 영어로된 선거안내 파일 http://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asy-english/ 2015년 5월 검색.

❍ 하지만 호주 NGO 연합이 발표한 투표할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법」 1992(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63)]

- 그 근거로 투표 장소의 접근성이 낮으며, 다른 시민에 비해 선거정보나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음. 그 외에도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투표용지가 없으며 장애인 범위에 따른 법적 적용이 잘못되고 있어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는 장애인이 많음을 지적함.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연방선거법」 15항 B에서 '시력이 낮은 사람의 투표를 돕는 전자보조투표기기'에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조투표기기를 비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었음[64)].

❍ 「연방선거법」 15항 202AB조에서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전자보조투표기기(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사용하여 투표를 선택한 경우, 시각장애를 가진 투표자에게 다른 일반 투표자와 동일한 절차로 선거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63) 인권법센터(Human Rights Law Centre)에서 발간한 국립인권액션플랜 내용 중 투표할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 참고. http://www.humanrightsactionplan.org.au/nhrap/focus-area/disability-rights 2015년 5월 검색.

64)호주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호주의 투표할 권리'에 대한 기사 참조.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rights-and-freedoms/publications/right-vote-not-enjoyed-equally-all-australians#fn11a 2015년 5월 검색.

**202AB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법령**

(3) 전자보조투표기기는 다음과 같은

(a) 상원의원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ⅰ) 법령 16항의 적용을 받는 일반 상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서와 같은 순서로 같은 선거정보를 받으며 같은 투표선택방법을 제공받는다.

(ⅱ) 유권자가 대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 이는 239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표를 한다.

(b) 일반선거, 보궐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ⅰ) 법령 16항의 적용을 받는 일반선거, 보궐선거의 투표용지에서와 같은 순서로 같은 선거정보를 받으며 같은 투표선택방법을 제공받는다.

(ⅱ) 유권자가 대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 이는 240조의 요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표를 한다.

**202AB Regulations may provide for voting by an 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

(3) The 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 must be such that a person using the method:

(a) for a Senate election:

(i) receives the same information (in the same order), and has the same voting options, as would appear in the ballot paper for the Senate election that the person would be given if he or she were instead voting under Part XVI; and

(ii) is able to indicate his or her vote in a way that, if he or she were instead marking a ballot paper, w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39; and

(b) for a general election or by election:

(i) receives the same information (in the same order), and has the same voting options, as would appear in the ballot paper for the general election or by election that the person would be given if he or she were instead voting under Part XVI; and

(ii) is able to indicate his or her vote in a way that, if he or she were instead marking a ballot paper, woul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240.

##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실태

❍ 투표소에는 휠체어로 기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꼭 갖춰야 하며, 기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훈련을 받은 호주선거위원회 소속 사무원이 이를 돕게 하고 있음.

❍ 2010년 퀸슬랜드주에서 투표소 선정에 대한 불만이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에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투표소로 선정된 건물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17개의 계단이 있었고, 계단을 쉽게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건물의 뒤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위해 받는 것이라는 주장임.[65]

- 이에 공공서비스법 1999(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투표소 결정에 참여한 호주선거위원회(AEC) 관련자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문제는 2012년 중재되었음.

### 2)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시설현황 안내 및 제공

❍ 호주선거위원회가 투표소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13년 연방선거에서는 총 7,697개 투표소 중에 11.8%이 완벽하게 장애인 접근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70.2%이 부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음.[66]

- 투표소 장소 공고에는 장애인 시설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

65)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2011-2012 연간보고서 중 외부기관 조사관련 부분 참조. http://annualreport.aec.gov.au/2012/governance/scrutiny.html 2015년 5월 검색.

66) 장애인 유권자에 관한 법률제정 전에 호주선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 참고 http://www.alrc.gov.au/sites/default/files/subs/10._org_australian_electoral_commission_submission_to_alrc.pdf 2015년 5월 검색.

고 투표소 표지판에는 장애인시설이 갖추어진 투표소 입구와 주차 공간이 명시되어야함.

3) 중증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18세 이상의 호주시민은 연방선거와 국민투표에 등록 및 투표할 의무가 있으며 연방선거법 1918에서는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는 투표소 사무원 및 타인의 도움을 통해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투표소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투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의 유권자를 위해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음.[67]
- 선거일에 유권자가 기표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우편투표 신청도 2013년 연방선거부터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동투표 팀은 선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병원, 요양원, 감옥, 호주의 외딴 곳에 방문하여 유권자들의 선거를 도움.

4) 투표도우미의 투표지원

- 시력이 나쁘거나, 신체적 문제가 있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을 투표주재관에게 확인받는 경우, 해당 유권자는 친구, 친척, 참관인, 정당원 등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을 지명하여 참관인의 참관하에 기표소로 함께 들어가서 도움 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34조)

67) 장애인 유권자에 관한 법률제정 전에 호주선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 참고 http://www.alrc.gov.au/sites/default/files/subs/10._org_australian_electoral_commission_submission_to_alrc.pdf 2015년 5월 검색.

-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가 미리 특정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투표소 책임사무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음. 투표도우미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이때 투표참관인은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없음.

❍ 타인의 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라도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없음.[68] 하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소 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선언투표봉투에 서명을 대신하는 표시를 하고 선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투표 사무원은 장애인 유권자가 한 표시 위에 'his mark' 혹은 'her mark'를 쓰고 그 표시 왼쪽에는 유권자의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는 성을 대신 써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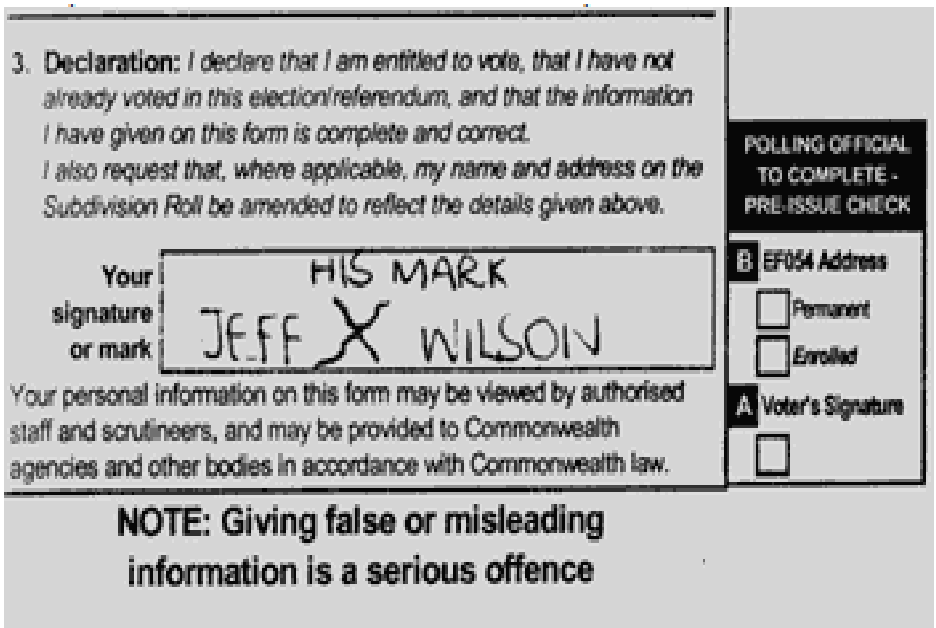
3. **Declaration:**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vote, that I have not already voted in this election/referendum, and that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on this form is complete and correct.*
*I also request that, where applicable, my name and address on the Subdivision Roll be amended to reflect the details given above.*

Your signature or mark: HIS MARK JEFF X WILSON

Your personal information on this form may be viewed by authorised staff and scrutineers, and may be provided to Commonwealth agencies and other bodies in accordance with Commonwealth law.

POLLING OFFICIAL TO COMPLETE - PRE-ISSUE CHECK
B EF054 Address
Permanent
Enrolled
A Voter's Signature

**NOTE: Gi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a serious offence**

<사진2> 투표소 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서명을 대신한 경우의 예시

68) 호주선거관리위원회 자주묻는질문과 답 부분의 선언투표 내용참고.
http://www.aec.gov.au/FAQs/Voting_Australia.htm#help 2015년 5월 검색.

##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

❍ 「연방선거법」 제202조AB는 시각장애를 가진 유권자에게 일반선거, 상원의원선거, 보궐선거에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선거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전체적으로 혹은 특정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음.

- 세부 법령에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전자보조투표기기를 사용 가능한 투표소 장소의 수, 유권자가 보조투표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보조투표기기를 사용가능할 수 있는 유권자 기준,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기표대, 투표함과 같은 장애인 선거용품은 따로 준비되지 않음.

<사진3> 2010년 다윈(Darwin)지역의 한 투표소[69]

69) 호주 스윈번대학교 미디어 센터 자료에서 호주 투표시스템의 효과성 기사 중 사진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별도의 장애인용 투표용지가 있지 않지만 2012년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를 처음으로 활용하였음. 점자로 된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우편투표, 선거인이 지정한 투표소에 제공됨.

- 점자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점자를 활용하여 투표하는데 적법한 유권자임을 확인 받아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주선거위원회에 선호하는 투표형태를 알려야함.
-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약 10%만이 점자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도 있음.[70]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전자보조투표기기(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사용하여 투표를 선택한 경우, 투표자가 기표한 특정인이 누구인지 나타내지 않는 한에서 녹화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렇게 녹화된 기록은 적법하게 기표된 투표용지로 인식함. (연방선거법 제 202AC, 202AD조)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대상·범위 및 방법

❍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안좋은 유권자를 위하여 전화기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동전화투표서비스(Automated Telephone Voting service)[71]가 있음.[72] 이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스스로 투표

http://www.swinburne.edu.au/media-centre/news/2014/08/australias-un-doing-of-voter-intimidation.html 2015년 5월 검색.

70) 뉴사우스웨일즈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투표시스템(iVote) 설명 참고. http://www.elections.nsw.gov.au/voting/ivote/background 2015년 5월 검색.

71)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의 2013년 선거에 대한 정보가 나온 부분에 의하면, 전화투표를 통해 투표를 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미리 신청을 하면 6자리 비밀번호를 발부 받아서 전화를 통한 투표를 할 수 있음.

-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 종류를 정해놓고 있으며, 이에는 신체적 장애, 지적 장애, 정신지체, 감각 관련 장애, 신경 관련 장애, 학습 불능 장애가 있음.
- 전화기에 있는 12개의 키(1,2,3,4,5,6,7,8,9,*,0)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대한 피드백은 음성으로 남길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일반적인 투표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선호를 표시한 자료(How to Vote Card; HTVC)'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소속 정당,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본인 확인 후 유권자는 선거인등록부에 따라 등록된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투표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표가 시작되기 전에 유권자에게 들려줌.
- 하지만 장애를 가진 유권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을 구동할 수 있는 키패드와 핸드셋을 갖춘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야하고, 스피커폰을 사용하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타인이 기표내용을 들을 수 있어 비밀투표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수는 2010년 연방선거에서 410명이었고, 2013년에는 그 수가 2,832명이었음.

72) http://www.eca.gov.au/research/files/telephone-voting-standard.pdf

## 4. 시설 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

❍ 「연방선거법」 제2호 시행령에는 우편투표[73] 또는 사전투표 신청의 근거가 서술되어 있으며 그 중 시설 안에서 장애인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선거인이 질병, 쇠약, 자녀출생 임박의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선거일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경우, 제 224조(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 및 227조의 적용과 관계없이 적용)

###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투표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의무 기준 및 현황

❍ 「연방선거법」 제224조에서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Hospital that are polling places)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환자가 해당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거나 병원이 위치한 주 혹은 준주 선거의 유권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투표하기 원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함.[74]

- 투표할 수 있는 병원 외의 기타 병원에서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 이동투표가 가능하다는 「연방선거법」 제225조는 삭제되었음.

❍ 투표주재관이 투표할 수 있는 병원의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투표함, 투표용지, 기타 환자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여타의 물품을 가지고 가야하며 필요한 경우 투표 사무관과 참관인을 동반해야함.

---

73) 호주선거위원회(AEC) 홈페이지의 2013년 선거에 대한 정보가 나온 부분에 의하면, 2010년 95만명의 우편투표 신청자가 있었고 2013년 연방선거에서는 130만 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하였음.

74) 선거위원회가 관보에 공고하여 투표할 수 있는 병원 외의 기타 병원에서 투표하기 원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병원에서 이동투표가 가능하다는 「연방선거법」 225조는 삭제되었음.

- 투표주재관이 환자와 같은 방 혹은 같은 병동에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어 해당 방 혹은 병동이 환자의 투표소가 됨.
- 투표주재관이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후보자 혹은 해당 정당에서 제공하는 선거관련 선거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선거방법 등 환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주어야함.(「연방선거법」 제226조2A)
- 환자를 방문할 때는 해당 투표날 혹은 투표가 연기된 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투표주재관이 투표소를 떠나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투표사무관이 대신 해당 병원 안에 설치된 기표소에 있어야 함.
- 「연방선거법」 제224조에 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의 이유로 인해 투표주재관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환자는 투표를 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226조1)

❍ 선거위원회에서는 원격지 기표소를 설치하여 유권자들의 투표를 도울 수 있음. 「연방선거법」제227조에 따라 원격지의 이동투표를 운영할 이동투표 팀의 팀원과 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근거 없이도 이 법에 따라 원격지투표가 가능함.

- 선거위원회에서는 투표의 목적에 따라 방문할 장소를 관보에 공고하고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도 원격지 투표의 장소와 날짜를 공시할 수 있음. 원격지 투표의 날짜는 선거일, 해당 투표가 연기된 날, 혹은 선거일 12일 전 어느 날로 정할 수 있음.
- 이동투표 팀이 투표함, 투표용지, 그룹투표티켓 등 투표에 필요한 기타 다른 용품과 후보자가 제공하는 '후보자 선호를 표시한 책자(how-to-vote card)'가 있다면 이를 제공해야함.

❍ 어떠한 이유로 이동투표 팀의 팀장이 해당 선거를 위한 원격지 투표를 위한 방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팀장은 다른 장소, 시간으로 대신 정할 수 있음.

2) 장애인시설 거소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정당, 후보 측이 장애인시설 내 거소투표의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감시하는 법령이나 규칙은 없으나, 「연방선거법」 제224조에 따라 이동투표소가 설치된 병원(Hospital that are polling places)에서의 투표의 경우에 해당 선거 주재관이 환자를 방문할 때 투표 사무관과 참관인이 참여하여 절차를 감독해야함.

## 5. 그밖에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관련 입법례

❍ 201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호주 연방선거법 상에서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 중 'unsound mind' 용어는 장애인을 차별할 여지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요청함.[75] 정신 미약인지 선별하는 테스트를 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이는 쉽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또한 선거인등록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의료인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생득적으로 획득한 투표할 권리능력을 가정하지 않은 것임.[76]

75) 호주 ABC라디오에서 인권변호사와 앵커가 나눈 장애인유권자의 투표권 증진에 대한 인터뷰 내용 참고.http://www.abc.net.au/pm/content/2013/s3931818.htm 2015년 5월 검색.

76) 장애인 유권자에 관한 법률제정 전에 호주선거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 참고 http://www.alrc.gov.au/sites/default/files/subs/10._org_australian_electoral_commission_submission_to_alrc.pdf 2015년 5월 검색.

# V. 일 본

일본 연구관 : 송재현

## 1.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선거정보 제공

### 1) 선거관리 기관, 후보자, 정당의 정보 및 선거정보 등 제공 실태

❍ 시각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선거정보로는 인쇄물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무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고하는 형식임.

- 「공직선거법」 및 관계 법령(공직선거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집행규정, 공직선거법 시행 규칙) 내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관련 자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총무성은 각 자치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등의 선거정보 제공을 의뢰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77].
- 전국 규모의 강제 규정은 없으나,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구정촌(市區町村)별로 점자, 음성 테이프를 이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중의원, 참의원 선거와 같은 국정선거의 경우, 대부분의 도도부현에서 점자판, 음성판 선거정보를 제공하나 지방선거의 경우 제한적임.
- 점자판 선거공약의 경우, 대부분 요약판으로 전역(全譯)은 소수임.

77) 총무성청취자료(http://www8.cao.go.jp/shougai/suishin/kaikaku/s_kaigi/k_9/pdf/s4.pdf)

<사진 1> 음성코드를 포함한 선거공약

**교토부(京都府)의 사례** [78]

❍ 2007년 참의원 선거 이후 문자확대, 점자, 음성판 선거공약(전역)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선거인 2015년 4월 12일 교토시의회의원선거, 교토부 의회의원 선거에도 문자 확대, 점자, 음성판 선거공약을 제공.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사례**

❍ 2015년 4월 12일 카나가와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공약을 문자 확대, 점자, 음성(테이프)으로 제공.

**시마네현(島根縣)의 사례**

❍ 2015년 4월 12일 시마네현 지사 및 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약을 점자, 음성판으로 제공

78) http://www.city.kyoto.lg.jp/senkyo/page/0000098278.html

**점자 및 음성 선거정보 제공 현황.(총무성 조사자료[79])**

**제22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선거구)**

- 점자: 47/47 (100%)
- 음성: 41/47 (82.3%)

**제22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비례대표)**

- 점자: 47/47 (100%)
- 음성: 47/47 (100%)

**도도부현지사 선거[80]**

- 점자: 45/47 (95.7%)
- 음성: 29/47 (61.7%)

**민간단체에 의한 음성 선거공약 제공[81]**

❍ 2013년 6월 참의원선거 선거공약의 경우 23개 도도부현에서 「일본맹인회연합」이 제작한 음성코드를 포함하는 선거공약을 제공. (사진 1 참조)

❍ 청각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선거정보로는 연설회 및 정견방송이 있으나 정견방송의 경우 수화 통역이나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함. (의무사항은 아님)

- 가두연설 및 연설회의 경우 청각정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화 통역자를 동반하지 않는 이상, 청각 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전달이 불가능.
- 단, 후보자 정견방송의 경우, 수화 통역 및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함.
- 수화 통역의 경우, 참의원 선거구선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선거에

79) 장애자에 관련된 투표환경 향상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109980.pdf)
80) 201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선거. 일본의 경우 재보궐선거에 의해 지사가 당선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형식이 아니라 새로 4년간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사 선거가 일치하지 않음.
81) http://senkyo.mainichi.jp/news/20130611ddf041010010000c.html

삽입가능.

- 자막의 경우 중의원 선거구 선거와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서 삽입가능.
- 2010년 현재 정견방송의 수화 통역이 가능한 자는 전체 수화 통역자 2,609명 중 642명. [82]

2) 관련법 및 국가지원 범위

❍ 일본의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 규정[83]은 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

❍ 「공직선거법」제197조의 2: 중의원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의 범주에 수화 통역자를 포함함.

❍ 정견방송 및 경력방송 실시규정: 정견방송에 수화 통역 및 자막 삽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점자 및 음성판 선거공약 및 선거정보에 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없음.

## 2. 투표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법

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투표소 확보 실태

❍ 법적인 규제는 없으며, 총무성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형식

❍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2층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음.

❍ 투표소에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면을 설치

82) 각주 3참조

83) 공직선거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집행규정, 공직선거법 시행 규칙

<사진2> 투표소 입구의 경사면 설치 예

❍ 이상의 사항은 총무성의 요청사항이므로 강제하는 규정은 아님.

❍ 다만 대부분의 투표소가 이상의 요청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2)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안내 및 제공

❍ 제22회 참의원통상선거 사전 투표소 및 당일 투표소의 접근성 개선 현황에 관한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이하의 표 참조)

- 사전 투표소 : 입구에 계단과 같은 단차가 있는 투표소의 경우, 약 99.4%의 투표소에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입구와 투표소가 다른 층에 위치한 투표소의 경우 약 99.8%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당일 투표소: 입구에 계단과 같은 단차가 있는 투표소의 경우, 약 99.9%의 투표소에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입구와 투표소가 다른 층에 위치한 투표소의 경우 약 99.3%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경사면 혹은 승강기와 같은 편의 시설이 없을 경우, 투표 도우미가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

| | |
|---|---|
| 사전 투표소 | |
| 사전 투표소 총수 | 4,642 |
| 1. 입구에 단차가 있는 곳 | 638 |
| 경사면 있음 | 634 |
| 경사면 없음 | 4 |
| 2. 건물입구와 투표가에 동일한 층에 없는 곳 | 1,054 |
| 승강기 있음 | 1,052 |
| 승강기 없음 | 2 |
| 당일 투표소 | |
| 당일 투표소 총수 | 50,311 |
| 1. 입구에 단차가 있는 곳 | 27,408 |
| 경사면 있음 | 27,393 |
| 경사면 없음 | 15 |
| 2. 건물입구와 투표소가 동일한 층에 없는 곳 | 853 |
| 승강기 있음 | 847 |
| 승강기 없음 | 6 |

3) 중증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편의 제공

❍ 투표소까지 거리가 먼 경우,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택시 및 버스를 지원하는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곳은 일부 존재함.

- 2010년 통일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소가 2006년에 비해 1,800개 감소함에 따라, 14개 도도부현의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 및 버스를 이용한 투표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함.[84)]

- 다만 이는 투표소 수가 감소함에 따라 투표소와의 거리가 멀어짐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
|---|
| **삿포로(札幌)시의 사례** [85] |
| - 통상, 장애로 인한 우편투표는 신체장애인 수첩에 양 다리, 이동기능, 체간기능의 장애가 기입되어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음(예를 들면 완전 마비, 보행곤란, 기립곤란 등). 따라서 2007년 제16회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삿포로 시에서는 이동이 곤란한 장애인을 투표소까지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이 아닌 "장애인 자립지원법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홋카이도 실행 위원회"가 주최. |
| - |

4) 투표소 도우미의 투표지원

❍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투표소에 도우미가 상주하며, 휠체어 환자 등을 위한 투표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음. [86]

## 3. 투표편의 지원 방법

1) 장애인용 기표대, 기표용구, 투표함 등 선거용품 제공여부

❍ 「공직선거법」제262조 2항은 선거에 필요한 물품 중 점자기 조정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항이 없으나 「공직선거법」제47조가 점자투표를 보장하는 관계로 모든 투표소에는 점자 투표기가 비치되어 있음.

84) http://www.asahi.com/senkyo/news/TKY201012050352.html
85) http://www.dpi-japan.org/hokkaido/katsudou/jiritushien_taiou/tousyo2007/isou/youkou.pdf
86) 각주 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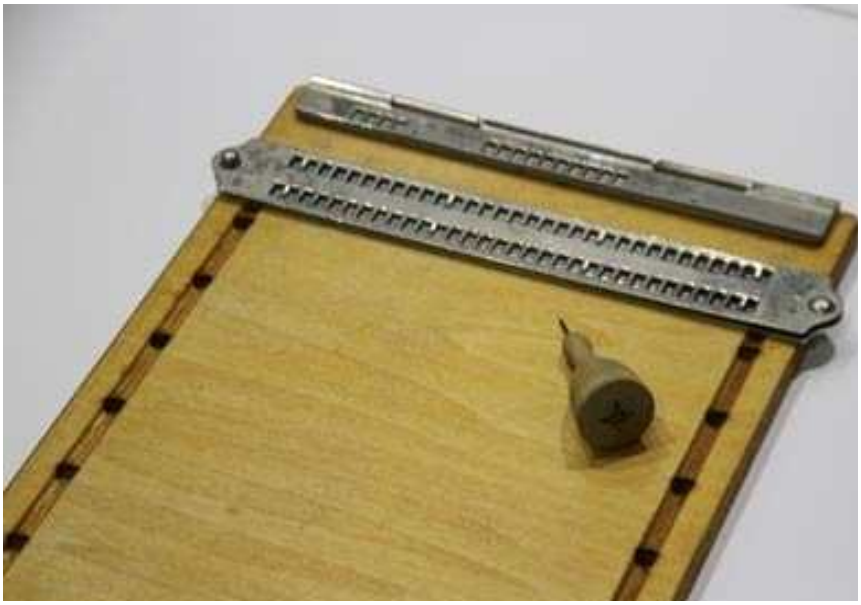

<사진3> 점자기

❍ 또한 총무성은 각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휠체어, 휠체어용 기표대, 돋보기, 노안경 등의 용품을 비치해 둘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이용가능.

<사진4> 휠체어용 기표대

2) 장애인용 투표용지 작성사례

-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7조로 점자투표용지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음.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행해질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투표용지는 색을 다르게 하며, 색은 각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함.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지정함.
- 중의원선거와 함께 행해지는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의 경우, 통상 재판관의 이름에 X표를 하는 것으로 불신임을 표현하나 점자투표의 경우 재판관의 이름을 직접 점자로 기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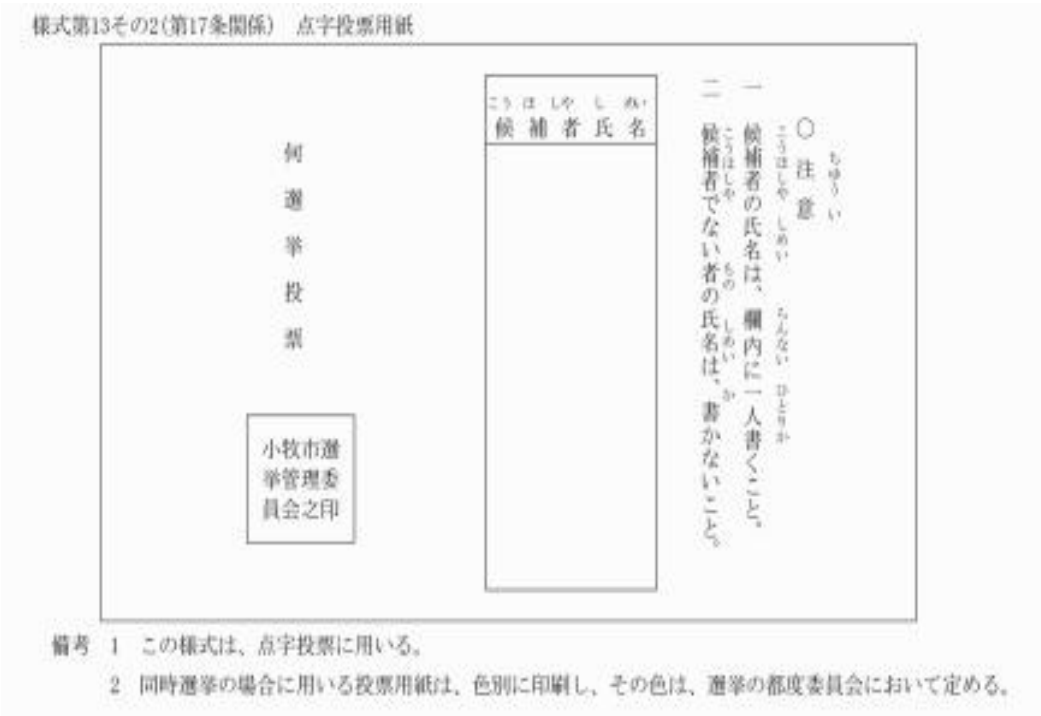
様式第13その2(第17条関係)　点字投票用紙

何選挙投票

小牧市選挙管理委員会之印

候補者氏名

○注意

一　候補者の氏名は、欄内に一人書くこと。

二　候補者でない者の氏名は、書かないこと。

備考　1　この様式は、点字投票に用いる。

2　同時選挙の場合に用いる投票用紙は、色別に印刷し、その色は、選挙の都度委員会において定める。

<사진5> 점자투표용 투표용지의 예(코마키(小牧)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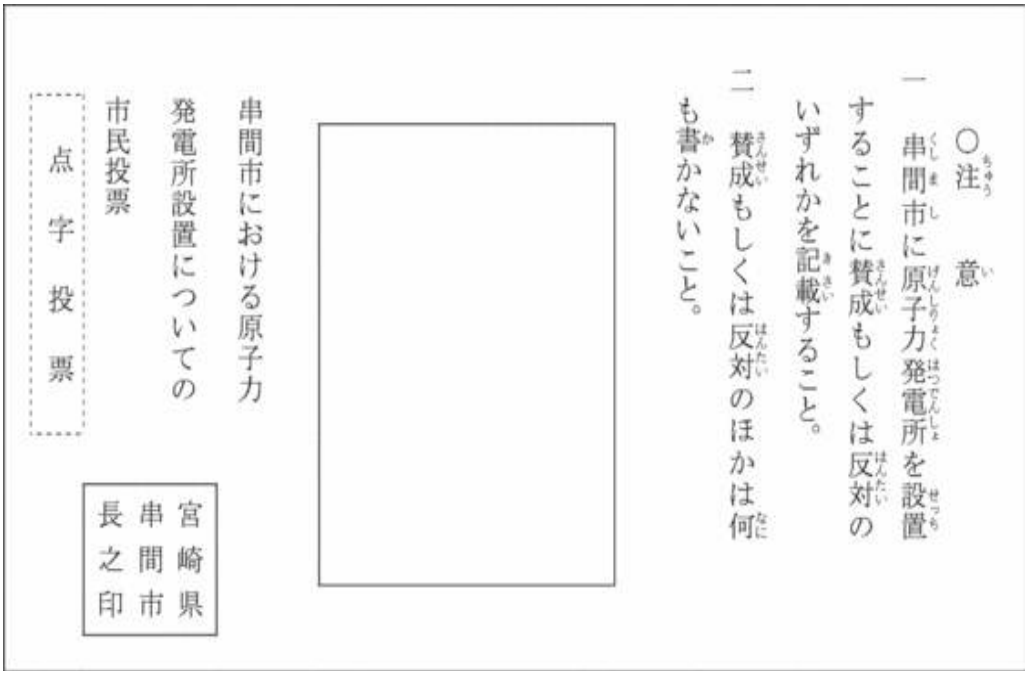
○注　意
一　串間市に原子力発電所を設置することに賛成もしくは反対のいずれかを記載すること。
二　賛成もしくは反対のほかは何も書かないこと。

串間市における原子力発電所設置についての市民投票

点字投票

宮崎県串間市長之印

<사진6> 쿠시마(串間)시 주민투표 점자투표용지 예

注　意
一　やめさせた方がよいと思う裁判官については、その名の上の欄に×を書くこと。
二　やめさせなくてよいと思う裁判官については、何も書かないこと。

×を書く欄

裁判官の名

山浦善樹
岡部喜代子
須藤正彦
横田尤孝
大橋正春
千葉勝美
寺田逸郎
白木勇
大谷剛彦
小貫芳信

<사진7> 일반적인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투표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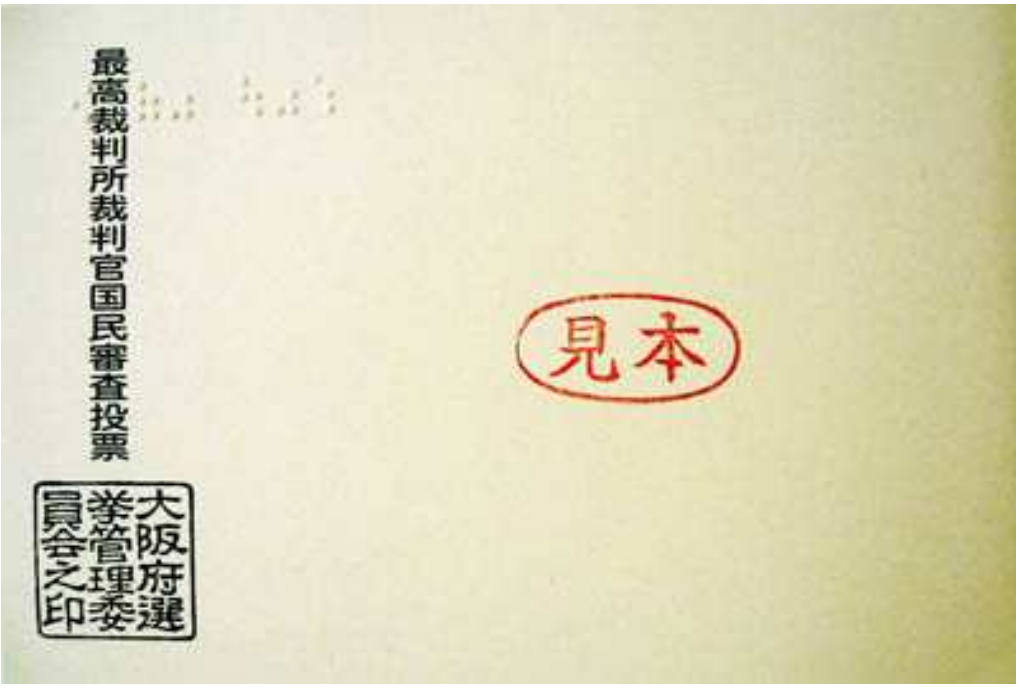


<사진8> 점자투표용 최고재판소재판관 국민심사 투표용지

3) 시각장애인 본인의 기표내용 확인방법

❍ 시각장애인의 점자투표의 경우 본인 기표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다른 조치사항 없음.

4) 장애인 기표행위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87)]

❍ 장애인의 기표 방법으로는 점자투표와 대리투표가 공직선거법상 보장되고 있음.

- **점자투표** : 통상적인 글을 쓸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투표관리자에게 요청하면 투표관리자는 점자투표임이 표시된 투표용지(사진 5)

87) http://www.pref.tochigi.lg.jp/senkyo/sangisenkyo/qanda/qanda-2.html

를 배부함. 투표자는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점자기(사진 3)를 이용해 점자로 후보자명 혹은 정당명을 기입 후 투표.

- **대리투표(1)** : 손이나 팔의 장애로 인해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대리투표가 가능. 투표관리자에게 대리투표를 신청하면 투표관리자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투표 입회인과 상의를 거쳐 2명의 투표보조인(투표사무자 종사하는 자에 한함)을 선출함. 그 중 한명이 대리로 기표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입회하도록 되어있음.
- **대리투표(2)** : 정신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88]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2013년 「공직선거법」등의 개정 이래로 참정권이 보장되었으며, 상기의 대리투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침.

❍ 청각 장애자 및 언어 장애자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투표가 가능하나, 투표 절차 등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비하여 커뮤니케이션 보드[89]를 비치.

88) 모든 정신질환을 포함하지 않으며, 가정재판소로부터 후견개시의 판결을 받은 자만을 칭함.
89) 커뮤니케이션 보드는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기재한 인쇄물을 칭함. 청각 장애자 혹은 언어 장애자가 커뮤니케이션 보드상의 특정 질문을 선택하여 투표 관리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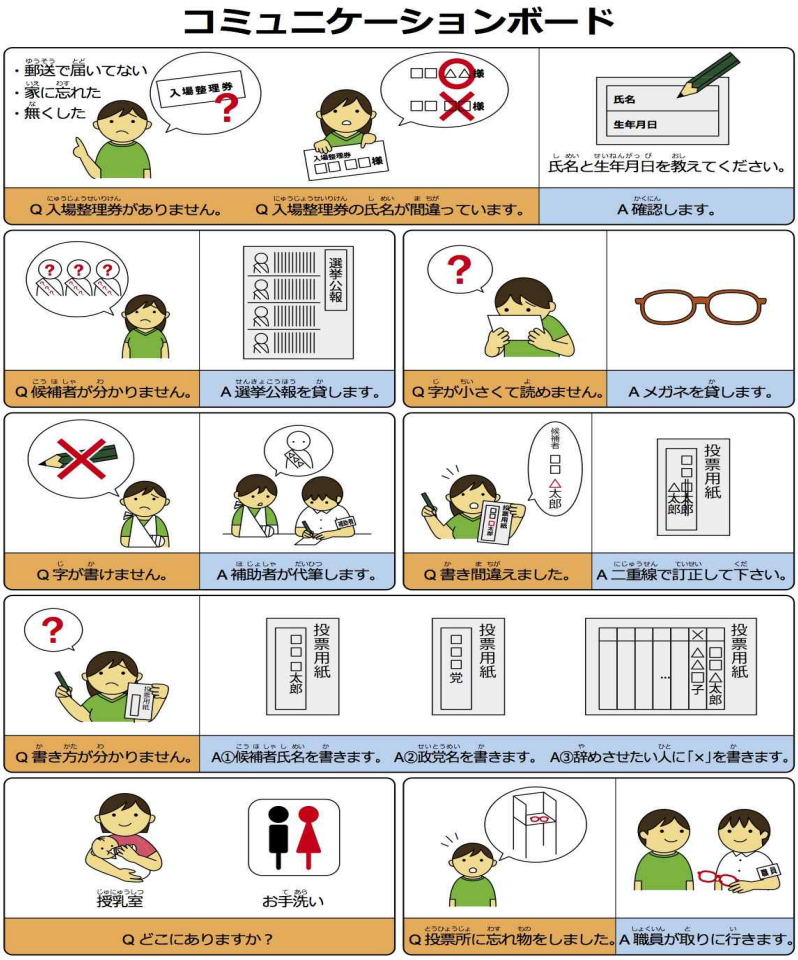


<사진9> 커뮤니케이션 보드

## 4. 시설 안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 1) 장애인시설 유형별 거소 투표 신고자(우편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 의무 기준 및 현황

❍ 신체장애자이면서 신체장애자 지원 시설[90]에 입소해있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투표용지 및 봉투를 신청할 수 있음.(「공직선거법시행령 제 50조」)

90)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에서 지정하는 곳에 한함.

❍ 시설내의 기표소는 부재자 선거관리자(각 시설의 장(長))가 지정한 소정의 장소에서 행해짐.

-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라도, 일정 이상[91]의 장애가 인정될 경우,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 투표가 가능.[92]

2) 장애인시설 거소 투표자의 비밀투표, 직접투표 보장방법

❍ 총무성은 대리투표는 직접투표 및 비밀투표 원칙의 예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93].

❍ 장애인시설 내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경우 이하와 같은 절차로 투표함.(「공직선거법」 제 49조 및 「공직선거법시행령」 제 58조)

<사진10> 시설 내 투표소

91) 신체장애자 수첩에 양다리, 이동기능, 체간장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92) 총무성 선거제도 소개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5.html)
93)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33483.pdf

- 부재자투표 관리자에게 투표용지와 투표봉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 소정의 장소에서 기표
- 부재자투표 관리자에게 제출
- 2013년부터는 시설 내 투표소에 외부 입회인을 두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국정 선거의 경우 국비로 그 비용을 보조함.
- 투표봉투에는 기표한 날짜와 장소를 기입하기 때문에(「공직선거법시행령」 제 59조의 2), 해당 시설 내의 투표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비밀투표의 보장이 불가능함.